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세입·기획조정실·통상차관보)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세입·기획조정실·통상차관보)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세 입 ····· 1

1) 토지대여료(일반회계) ····· 5
2) 건물대여료(일반회계) ····· 10
3) 기타재산수입 (일반회계) ····· 14
4)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 16

2. 기획조정실 ····· 19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속, 정보화) ····· 23
2) 변화관리능력개발(계속) ····· 40
3) 국내외 교육훈련(계속) ····· 47
4)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계속, 정보화) ····· 53
5) 청사이전지원(신규) ····· 65

3. 통상교섭실 ····· 69

1) 통상분쟁대응(계속) ····· 73
2)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계속) ····· 82

4. 통상정책국 ····· 97

1)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계속) ····· 101
2) 국제기구분담금(계속) ····· 110
3) 다자 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계속) ····· 115

5. 통상협력국 ····· 121

1) 양자산업협력(계속) ····· 125

2)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계속, ODA) ····· 135
3)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계속, ODA) ····· 142
4)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계속) ····· 145

세 입

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 세입예산 총괄표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47,473	94,023	235,247	141,224	150.20
【일반회계】	147,473	94,023	235,247	141,224	150.20

【일반회계】

관	항	목	2012결산	2013 예산 (A)	2014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147,473	94,023	235,247	141,224	150.20
재산수입			41,865	27,436	28,214	778	2.8
	관유물 대여료		14,234	7,801	8,580	779	10.0
		▪ 토지대여료	12,728	5,717	6,460	743	13.0
		▪ 건물대여료	1,506	2,084	2,120	36	1.7
		▪ 기타관유물대여료	-	-	-	-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631	19,635	19,634	△1	0.0
		▪ 기타재산수입	27,631	19,635	19,634	△1	0.0
경상이전수입			102,313	65,460	205,684	140,224	214.21
	벌금,몰수금및과태료		86	51	51	-	-
		▪ 벌금및과료	23	51	51	-	-
	변상금및위약금		63	-	-	-	-
		▪ 위약금	2,392	10	10	-	-
	기타경상이전수입		84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2,308	10	10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99,835	65,399	205,623	140,224	214.41
	잡수입		99,835	65,399	205,623	140,224	214.41
		▪ 기타잡수입	70	29	30	1	3.4
수입대체경비수입			70	29	30	1	3.4
	잡수입		70	29	30	1	3.4
		▪ 기타잡수입	577	517	531	14	2.7

관	항	목	2012결산	2013 예산 (A)	2014 예산 (B)	증 감 (B-A)	%
관유물매각대			577	517	531	14	2.7
	고정자산매각대		577	517	531	14	2.7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649	581	788	207	35.6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	-	-	-	-
		▪토지매각대	-	-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649	581	788	207	35.6
	전입금		2,649	581	788	207	35.6
		▪기타특별회계전입금					

토지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토지대여료	6,000	5,717	6,460	6,460	743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군산·마산·율촌·대불·울산·김제·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토지 임대료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임대한 토지 임대료

○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토지대여료	2,406	3,063	2,851	4,903	3,614	4,345	3,848	4,457	6,000	12,821	25.7	43
(전년대비증가율)	-	-	18.5	60.1	26.8	△11.4	6.5	1.2	55.9	187.7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토지대여료	3,063	4,903	4,345	4,457	3,255	5,717	3,865	67.3	6,460
(전년대비증가율)		60.1	△11.4	1.2	△24.5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5,717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021백만원** ▪ 천안 609,371,562=468,632 ×3,024 ×43%×100%×100% ▪ 평동 714,494,068=1,070,973 ×1,116 ×61%×98% ×100% ▪ 대불 264,122,232=1,170,576 ×552 ×43%×98% ×97% ▪ 오창 268,983,891=446,269 ×1,968 ×41%×90% ×83% ▪ 구미 21,665,696=329,433 ×1,488 ×11%×49% ×82% ▪ 구미부품 50,178,199=255,469 ×1,488 ×20%×88% ×75% ▪ 인주 57,261,009=159,457 ×1,596 ×30%×100%×75% ▪ 사천 258,663,019=495,865 ×1,932 ×30%×100%×90% ▪ 달성 22,600,036=104,187 ×1,236 ×26%×90% ×75% ▪ 장안1 85,010,780=418,156 ×2,172 ×30%×78% ×40% ▪ 장안2 46,956,013=368,977 ×3,636 ×25%×35% ×40% ▪ 당동 49,242,485=239,355 ×4,584 ×30%×44% ×34% ▪ 지사 149,256,168=298,070 ×3,372 ×20%×99% ×75% ▪ 오성 16,852,739=362,331 ×3,876 ×20%×15% ×40% ▪ 포항부품 14,946,687=327,240 ×1,740 ×10%×35% ×75% ▪ 익산부품 20,852,761=320,440 ×1,236 ×18%×39% ×75% ▪ 창원부품 10,253,226=71,368 ×3,756 ×10%×51% ×75% ▪ 어연 30,264,935=60,557 ×3,288 ×38%×100%×40% ▪ 추팔 25,650,713=88,976 ×2,772 ×26%×100%×40% ▪ 포승 14,933,049=95,773 ×3,372 ×34%×34% ×40% ▪ 현곡 64,427,548=393,296 ×2,844 ×40%×40% ×36% ▪ 미음 40,416,681=331,910 ×5,412 ×30%×10% ×75% ▪ EEW 13,424,573=52,491 ×1,023 ×50%×100%×50% ▪ 날코 171,332,700=29,668 ×11,550 ×100%×100%×50% * 임대료 = 임대면적(㎡)×단가(원)×비감면율×입주율×지분율 ○ 마산자유무역지역 : 1,148백만원 ▪ 141원×678,333㎡×12월=1,148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622백만원 ▪ {86원×316,000㎡+43원×515,717+(56,660×43원)}×12월=622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839백만원 ▪ 72원(㎡당 단가)×971,250㎡(임대예상면적)=839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25백만원 ▪ 26원×79,872㎡(임대예상면적)×12월=24백만원 ○ 율촌자유무역지역 : 62백만원 ▪ 40원(㎡당 단가)×129,500㎡(임대예상면적)=62백만원

'14년	6,460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 3,452백만원 ▪ 천안 623,542,994 = 468,632 × 3,024 × 44%× 100%× 100% ▪ 월전 36,026,884 = 99,060 × 924 × 48%× 82%× 100% ▪ 대불 693,116,779 = 1,170,576× 636 × 95%× 98%× 100% ▪ 오창 217,219,294 = 446,269 × 2,172 × 30%× 90%× 83% ▪ 구미 28,740,209 = 329,433 × 1,488 × 13%× 55%× 82% ▪ 구미부품 95,794,744 = 255,469 × 1,488 × 70%× 48%× 75% ▪ 인주 118,827,356 = 159,457 × 1,656 × 60%× 100%× 75% ▪ 사천 554,792,010 = 495,865 × 2,136 × 60%× 97%× 90% ▪ 달성 22,574,718 = 104,187 × 1,284 × 25%× 90%× 75% ▪ 장안1 84,450,786 = 418,156 × 2,376 × 25%× 85%× 40% ▪ 장안2 37,564,810 = 368,977 × 3,636 × 20%× 35%× 40% ▪ 당동 86,174,349 = 239,355 × 4,584 × 33%× 70%× 34% ▪ 지사 304,183,684 = 298,070 × 4,104 × 35%× 95%× 75% ▪ 오성 21,908,561 = 362,331 × 3,876 × 30%× 13%× 40% ▪ 포항부품 10,676,205 = 327,240 × 1,740 × 5%× 50%× 75% ▪ 익산부품 35,645,746 = 320,440 × 1,236 × 20%× 60%× 75% ▪ 창원부품 7,966,275 = 71,368 × 5,412 × 5%× 55%× 75% ▪ 어연 30,264,935 = 60,557 × 3,288 × 38%× 100%× 40% ▪ 추팔 25,650,713 = 88,976 × 2,772 × 26%× 100%× 40% ▪ 포승 14,726,363 = 95,773 × 3,372 × 30%× 38%× 40% ▪ 현곡 99,453,563 = 500,710 × 2,844 × 20%× 97%× 36% ▪ 미음 107,777,490 = 331,909 × 5,412 × 20%× 40%× 75% ▪ EEW 11,545,133 = 52,491 × 1,023 × 43%× 100%× 50% ▪ 날코 171,332,700 = 29,668 × 11,550× 100%× 100%× 50% ▪ 천안5 11,673,142 = 336,208 × 2,480 10%× 20%× 70% * 임대료 = 임대면적(㎡)×단가(원)×비감면율×입주율×지분율 ○ 군산자유무역지역: 589백만원 ▪ {86원(㎡당단가)×225,860㎡+43원(50%감면)×552,567㎡+69,174㎡×86원)}×12월 ○ 율촌자유무역지역: 82백만원 ▪ 40원(㎡당 단가) ×170,000㎡(임대 예상면적) × 12월=82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58백만원 ▪ 72원(㎡당 단가) × 877,314㎡(임대 예상면적) × 12월=75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228백만원 ▪ 전체부지(403,352㎡) × 예상임대료(150원/㎡) × 예상입주율(31.4%) × 12개월=228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100백만원 ▪ 50원(㎡당 임대료) × 166,666㎡ × 12월=100 ○ 동해자유무역지역: 30백만원 ▪ 26원(㎡당 단가)×98,090㎡(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221백만원 ▪ 161원/㎡,월 * 631,988㎡ * 12월= 1,221백만원

‘15년	6,645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3,389백만원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 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 계상 ○ 군산자유무역지역: 569백만원 ▪ ’14년 토지임대 완료로 ’14년도 세입안 적용=569백만원 ○ 율촌자유무역지역: 62백만원 ▪ 40원(㎡당 단가)×130,000㎡(임대 예상면적)×12월=62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28백만원 ▪ 72원(㎡당 단가)×843,052.2㎡(임대 예상면적)×12월 = 72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508백만원 ▪ 전체부지(403,352㎡)×예상임대료(150원/㎡)×예상입주율(70%)×12개월=508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168백만원 ▪ 70원(㎡당 임대료)×200,000㎡×12월=168 ○ 동해자유무역지역: 40백만원 ▪ 26원(㎡당 단가)×130,787㎡(임대예상면적)×12월=40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181백만원 ▪ 161원/㎡,월 * 611,116㎡ * 12월=1,181백만원
‘16년	6,577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3,457백만원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 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 계상 ○ 군산자유무역지역: 569백만원 ▪ ’14년 토지임대 완료로 ’14년도 세입안 적용=569백만원 ○ 율촌자유무역지역: 67백만원 ▪ 40원(㎡당 단가)×140,000㎡(임대 예상면적)×12월=67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28백만원 ▪ 72원(㎡당 단가)×843,052.2㎡(임대 예상면적)×12월 = 72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653백만원 ▪ 전체부지(403,352㎡)×예상임대료(150원/㎡)×예상입주율(90%)×12개월=653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210백만원 ▪ 70원(㎡당 임대료)×250,000㎡×12월=210 ○ 동해자유무역지역: 51백만원 ▪ 26원(㎡당 단가)×163,484㎡(임대예상면적)×12월=51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342백만원 ▪ 183원/㎡,월×611,116㎡×12월=1,342백만원

‘17년	7,338	○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임대료: 3,526백만원 ▪ 토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입주기업 수 증가에 따라 매년 2% 증가 계상 ○ 군산자유무역지역: 569백만원 ▪ ’14년 토지임대 완료로 ’14년도 세입안 적용=569백만원 ○ 율촌자유무역지역: 72백만원 ▪ 40원(㎡당 단가)×150,000㎡(임대 예상면적)×12월=72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728백만원 ▪ 72원(㎡당 단가)×843,052.2㎡(임대 예상면적)×12월 = 728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726백만원 ▪ 전체부지(403,352㎡)×예상임대료(150원/㎡)×예상입주율(100%)×12개월=726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324백만원 ▪ 90원(㎡당 임대료)×300,000㎡×12월=324 ○ 동해자유무역지역: 51백만원 ▪ 26원(㎡당 단가)×163,484㎡(임대예상면적)×12월=51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1,342백만원 ▪ 183원/㎡,월×611,116㎡×12월=1,342백만원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건물대여료(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건물대여료	2,029	2,084	2,120	36	**1.7**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군산·마산·대불·울산·김제·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공장건물 임대료

○ 법적 근거 :

- 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대여료	1,200	1,454	1,612	1,442	2,029	1,536	2,029	1,460	2,029	1,506	14.0	0.9
(전년대비증가율)	-	-	34.3	△0.8	25.8	6.5	-	△4.9	-	31.5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건물대여료	1,454	1,442	1,536	1,460	650	2,084	929	44.6	2,120
(전년대비증가율)	-	-	248	94	9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2,084	○ 마산자유무역지역 : 1,106백만원 ▪ 기존표준공장임대료 등 = 367백만원 ▪ 신축3호동 35,220㎡×977원×12개월=412백만원 ▪ 공공건물 : 326백만원(종업원기숙사,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군산자유무역지역 : 570백만원 ▪ 청사동 : 2,141,100원×12월×1.1=28,262천원 ▪ 업무지원동 : 8,665,550원×12월×1.1=114,385천원 ▪ 물류동 : 12,372,900원×12월=148,474천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 18,070,060원×12월=216,840천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2,586,180원×12월×2=62,068천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349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 220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 0원 ▪ 지원업체 : 129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59백만원 ▪ 표준공장 경공업동 : 401원×4,162㎡×12월=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 370원×6,863㎡×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 2,010원×401㎡×12월=9백만원
'14년	2,120	○ 군산자유무역지역 : 595백만원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5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96백만원 ▪ 표준공장(46백만원)+지원업체(50백만원)=96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85백만원 ▪ 청사동: 1,130㎡×3,650원(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입주율)=14.8백만원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 10,957m² ×1,220(예상임대료)×12개월×30%(예상입주율) + 10,957m² ×1,220(예상임대료)×3개월×30%(예상입주율) = 60.2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m² ×1.345(예상임대료)×3개월×30%(예상입주율)=10.5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71백만원 ▪ 표준공장 경공업동 401원(㎡당)×4,162㎡(임대예상면적)×12월=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370원(㎡당)×6,863㎡(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2,010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9백만원 ▪ 신축표준공장('13.12월 연면적 12,207㎡ 준공예정) 400원(㎡당 예정가격)×2,441㎡(임대예상면적)×12월=12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274백만원 ▪ 신축3호동 : 43,148.47㎡×989(평균임대료)×12=512백만원

		▪ 신축8호동 : 18,053.84㎡×1,016(평균임대료)×12=220백만원 ▪ 신축9호동 : 18,053.84㎡×1,016(평균임대료)×12=220백만원 ▪ 공공 건물 : 322백만원(생활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15년	2,588	○ 군산자유무역지역 : 600백만원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8,705천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9,286천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6,858천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5,671천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8,788천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96백만원 ▪ 표준공장(46백만원)+지원업체(50백만원)=96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358백만원 ▪ 청사동: 1,130㎡×3,650원(예상임대료)×12개월×70%(예상입주율)=34.6백만원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10,957m²×1,220(예상임대료)×12개월×70%(예상입주율)×2동 =224.5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m²×1.345(예상임대료)×12개월×70%(예상입주율)=98.6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43백만원 ▪ 360원(㎡당 임대료)×10,000㎡×12월=43 ○ 동해자유무역지역 : 82백만원 ▪ 표준공장 경공업동 401원(㎡당)×4,162㎡(임대예상면적)×12월=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370원(㎡당)×6,863㎡(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2,010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 신축표준공장('13.12 연면적 12,207㎡ 준공예정) 400원(㎡당 예정가격)×4,883㎡(임대예상면적)×12월 = 23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409백만원 ▪ 신축3호동 : 43,648.47㎡×989(평균임대료)×12=518백만원 ▪ 신축8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신축9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공공 건물 : 439백만원(생활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16년	2,745	○ 군산자유무역지역 : 600백만원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9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8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96백만원 ▪ 표준공장(46백만원) +지원업체(50백만원)=96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460백만원 ▪ 청사동: 1,130㎡×3,650원(예상임대료)×12개월×90%(예상입주율)=44.5백만원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10,957m²×1,220(예상임대료)×12개월×90%(예상입주율)×2동=288.7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m²×1.345(예상임대료)×12개월×90%(예상입주율)=126.8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86백만원

		▪ 360원(㎡당 임대료)×20,000㎡×12월=86 ○ 동해자유무역지역 : 94백만원 ▪ 표준공장 경공업동 401원(㎡당)×4,162㎡(임대예상면적)×12월= 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370원(㎡당)×6,863㎡(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2,010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 = 9백만원 ▪ 신축표준공장('13.12 연면적 12,207㎡ 준공예정) 400원(㎡당 예정가격)×7,324㎡(임대예상면적)×12월=35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409백만원 ▪ 신축3호동 : 43,648.47㎡×989(평균임대료)×12=518백만원 ▪ 신축8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신축9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공공 건물 : 439백만원(생활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17년	2,895	○ 군산자유무역지역 : 600백만원 ▪ 청사동 : 2,174,6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9백만원 ▪ 업무지원동 : 7,976,280원(월금액)×12월×1.1(증감율)=109백만원 ▪ 물류동 : 12,238,190원(월금액)×12월=147백만원 ▪ 표준공장 A타입 5개동: 17,096,310원(월금액)×12월×1.1(증감율)=226백만원 ▪ 표준공장 B타입 2개동 : 7,399,050원(월금액)×12월×2개동 = 89백만원 ○ 대불자유무역지역 : 96백만원 ▪ 표준공장(46백만원)+지원업체(50백만원)=96백만원 ○ 울산자유무역지역 : 511백만원 ▪ 청사동 : 1,130㎡×3,650원(예상임대료)×12=49.4백만원 ▪ 표준공장(경공업동)임대료: 10,957m²×1,220(예상임대료)×12개월×2동=320.8백만원 ▪ 표준공장(중공업동)임대료: 8,736m²×1.345(예상임대료)×12개월=140.9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 162백만원 ▪ 540원(㎡당 임대료)×25,000㎡×12월=162백만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17백만원 ▪ 표준공장 경공업동 401원(㎡당)×4,162㎡(임대예상면적)×12월=20백만원 ▪ 표준공장 중공업동 370원(㎡당)×6,863㎡(임대예상면적)×12월=30백만원 ▪ 청사동 지원시설 2,010원(㎡당)×401㎡(임대예상면적)×12월=9백만원 ▪ 신축표준공장('13.12 연면적 12,207㎡ 준공예정) 400원(㎡당 예정가격)×12,207㎡(임대예상면적)×12월=58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1,409백만원 ▪ 신축3호동 : 43,648.47㎡×989(평균임대료)×12=518백만원 ▪ 신축8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신축9호동 : 18,553.84㎡×1,016(평균임대료)×12=226백만원 ▪ 공공 건물 : 439백만원(생활관, 공공건물내 지원업체)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해당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해당없음

기타재산수입 (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재산수입	19,152	19,635	19,634	△1	-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출연금 및 보조금사업 등의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 이동통신기지국 운영수수료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재산수입	9,677	6,639	9,224	9,626	10,161	5,888	20,161	7,967	19,152	27,631	18.6	42.8
(전년대비증가율)	-	-	△4.7	45	10.2	△38.8	98.4	35.3	△5.0	246.8		

- ('12년)RCMS 이자 증가 및 신성장동력펀드의 예탁금 증가 등으로 세입 증대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기타재산수입	6,639	9,626	5,888	7,967	10,851	19,635	3,663	18.7	19,634
(전년대비증가율)		45	△38.8	35.3	36.2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19,635	○ 출연금 및 보조금사업 : 9,569백만원 ▪ 2,814,534백만원×0.34%=9,569 ⇨ ‘12년 출연금・보조금 예산액×최근 4년간 평균반납율 ○ RCMS(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이자 : 9,885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 181백만원
‘14년	19,634	○ 보조금 및 출연금사업 ▪ 2,081,103백만원× 0.47% ≒9,684백만원 ⇨ ‘13년 출연금 예산액 × 최근 4년(’10~‘13) 이자(가중)평균반납율 ○ RCMS(실시간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이자 : 9,600백만원 ○ 기타 : 국가기술표준원 사업비 정산이자 등 350백만원
‘15년	19,634	상동
‘16년	19,634	상동
‘17년	19,634	상동

* ‘14년 출연금·보조금 가중평균반납율=‘10년(20%), ’11년(20%), ‘12년(30%), ’13년(30%) 가중치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해당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기타경상이전수입 (일반회계)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기타경상이전수입	60,557	65,399	205,623	140,224	214.41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비 정산 잔액
- 재산수입과 토지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

○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7조 및 제14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기타경상이전수입	28,260	51,912	47,060	36,790	60,557	39,486	60,557	87,522	60,557	99,835	21.0	17.8
(전년대비증가율)	-	-	66.5	△29.1	28.7	7.3	-	121.7	-	14.1		

- ('12년) 다년도 사업의 '12년 일괄정산,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투자철회 및 오송 외투지역 토지매입비의 일괄 반환 등으로 세입이 증대

○ 상반기 징수실적

(백만원, %)

	'08	'09	'10	'11	'12	'13			
						예산(A)	실적(B)	(B/A, %)	년간전망
▪ 기타경상이전수입	51,912	36,790	39,486	87,522	43,131	65,399	10,020	15.3	65,400
(전년대비증가율)		△29.1	7.3	121.7	△50.7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13예산	65,399	○ 출연금 및 보조금 정산금(환수금) : 65,099백만원 ▪ 2,814,534백만원×2.31%= 65,099 □‘12년 출연금・보조금 예산 × 최근 4년간 평균반납율 ○ 국가기술표준원 정산액 : 285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3백만원 ▪ 임대료(1,719백만원)×1%(국유재산법 요율)×10%(추정비율) ▪ 공동부담금(420백만원)×3%(국세징수법 요율)×10%(추정비율) ○ 군산자유무역지역 : 11백만원 ▪ 연체료 : 6,011천원 ▪ 연부납이자료 : 5,025천원 ○ 동해자유무역지역 : 1백만원 ▪ 연체료 등 : 1백만원 ▪ 토지, 건물 재산수입(61백만원)×1%(추정비율) ▪ 공동부담금(7백만원)×1%(추정비율)
‘14년	205,623	○ 출연금 및 보조금 정산금(환수금) : 64,644백만원 ▪ 2,081,103백만원× 3.10%≒64,644 ⇨ ’13년 출연금 예산액× 최근 4년(’10~’13) 출연금 (가중)평균반납율 ○ 기술료 수입: 140,314 ○ 국가기술표준원 정산액 : 350백만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 311백만원 ▪ 토지매각대금 연체료 : 311백만원 - (주)코비즈니스닷컴 300백만원, (주)모드테크 4백만원, (주)쌍영방적 7백만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 연체료 등 4백만원 ▪ 임대료(2,590백만원)×1%(국유재산법 요율)×10%(추정비율) ▪ 공동부담금(414백만원) ×3%(국세징수법 요율)×10%(추정비율)
‘15년	65,309	상동
‘16년	65,309	상동
‘17년	65,309	상동

* 출연금 및 보조금 가중평균반납율=‘10(10%), ‘11년(10%), ’12년(40%), ‘13 예상(40) 가중치 적용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해당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해당없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직속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4,366**	**4,436**	**8,923**	**4,487**	**101.1**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218	3,275	3,159	△116	△3.5
○ 변화관리능력개발	149	209	257	48	23.0
○ 국내외교육훈련	205	232	213	△19	△8.2
○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	794	720	549	△171	△23.8
○ 청사이전지원	-	-	4,745	4,745	순증
【 합 계 】	**4,366**	**4,436**	**8,923**	**4,487**	**101.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구축	3,291	3,275	3,159	△116	△3.5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1-501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이인호), 정보관리담당관(신성필, 044-203-5550), 주무관(김희섭, 044-203-555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1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출연,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사업목적

○ 업무포털,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13)1,402 → ('14)857백만원

- 업무포털 기능개선 : 175백만원

(필요성) 업무포털 사용편의성 제고,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정부조직개편·세종시 이전으로 기능개선 필요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301.4	0.839	1.04	1.05	-	28,485,615
설계	119,382	301.4				-	35,981,735
구현	159,177	301.4				0.55	47,975,948
시험	124,357	301.4				0.55	37,481,200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75,595,219

- 홈페이지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208백만원

(필요성) 산업부 관리 15개 홈페이지 및 사이버홍보관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323.6	0.847	1.00	1.05	-	30,583,760
설계	119,382	323.6				-	38,632,015
구현	159,177	323.6				1.17	51,509,677
시험	124,357	323.6				0.19	40,241,925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208,785,232

- 문서중앙화시스템(舊 웹디스크시스템) 기능개선 : 100백만원

(필요성) 직원 간 협업·문서공유 및 문서 유실방지를 위해 개인PC에 보관중인 업무자료를 중앙 서버로 취합하여 협업체계의 기반 마련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197.5	0.650	1.05	1.025	-	18,665,923
설계	119,382	197.5				-	23,577,945
구현	159,177	197.5				1.17	31,437,458
시험	124,357	197.5				0.19	24,560,50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00,127,603

- 국회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78백만원

(필요성) '14년 정부통합전산센터 신규HW 탑재(G-클라우드)를 위한 SW이관, 프로그램 소스와 솔루션의 현행·최신화 등 기능개선 필요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253.3	0.650	1.07	1.175	-	23,939,636
설계	119,382	253.3				-	30,239,461
구현	159,177	253.3				0.31	40,319,534
시험	124,357	253.3				1.44	31,499,628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178,279,148

- **업무연락방 기능개선 : 82백만원**

(필요성) 업무효율성·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회원관리 강화 등 부내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165.7	0.650	1.03	1	-	15,660,473
설계	119,382	165.7				-	19,781,597
구현	159,177	165.7				1.17	26,375,629
시험	124,357	165.7				0.19	20,605,955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82,324,074

- **메신저 기능개선 : 35백만원**

(필요성) 중기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내 협업·공유 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부처 및 직원 간 소통강화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39.1	0.650	1.35	1.15	-	3,695,380
설계	119,382	39.1				-	4,667,836
구현	159,177	39.1				0.01	6,223,821
시험	124,357	39.1				1.88	4,862,35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35,876,864

- **지식관리 기능개선 : 79백만원**

(필요성) 집단적 타성을 제거하고, 직원들의 지식공유문화 활성화로 업무생산성 제고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 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4,511	160.5	0.650	1.03	1.025	-	15,169,016
설계	119,382	160.5				-	19,160,811
구현	159,177	160.5				1.20	25,547,909
시험	124,357	160.5				0.15	19,959,29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79,288,017

②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13)278 → ('14)776백만원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부내 행정정보시스템 39개,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15개 운영, HELP DESK 운영,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관리) : 468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 인력		-	-	16	20.5	24.5
노임단가		391,473	349,279	254,917	207,710	172,789
인건비				87,691,448	91,548,183	91,016,606
월평균일수		21.5				
직접인건비합계		270,256,236				
제경비	직접인건비×50%	135,128,118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5%	20,269,218				
운영비		425,653,572				
총 운영비(VAT포함)		468,218,929				

-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 158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업무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HW) 업무포털 DB서버 등 70식	1,543,140,000	77,157,000
(SW) 통합조직도 APP 등 29식	1,616,860,000	80,843,000
합 계		158,000,000

-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 150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업무용서버	16	9,000,000	144,000,000
L4 스위치	2	3,000,000	6,000,000
합 계			150,000,000

③ 디지털도서관 유지보수 및 고도화 : 44백만원

(필요성)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거시경제동향, 산업일반 등의 정책정보에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민간이나 외부컨텐츠 수요 급증

○지식재산권 관련 제재사항이 날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책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주제 DB컨텐츠의 구매가 불가피해짐

ㅇ우리부 직원들도 국내·해외 전문 저널 등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의 확보필요성 증대

ㅇ기존의 산하기관 보고서를 단순 가공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관련 자료에 대한 원천정보가 요구되는 상황

(사업내용) 세종시 산업부 도서관 개관에 맞춰 광범위한 원문지원서비스를 위한 해외원문DB콘텐츠 신규도입 및 국내원문DB콘텐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MOTIE 1차 DB컨텐츠 아키텍쳐사업' 추진

-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전자도서관 유지보수 : ('13)12 → ('14) 11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통전이체대상

항목	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도서관리프로그램 미 전자도서관 유지보수사업(계속)	1	11,000,000	11,000,000
합 계			11,000,000

- 원문DB컨텐츠 아키텍쳐구축(1차사업) : ('13)0 → ('14) 33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기타),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DB컨텐츠 아키텍쳐 사업	Science Direct	1	20,000,000	20,000,000
	DBPIA	1	4,500,000	4,500,000
	한국학술정보	1	5,000,000	5,000,000
	교보스콜라	1	3,500,000	3,500,000
합 계				33,000,000

ㅇ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3)1,086 → ('14예산)1,156백만원

① 재정집행통합관리시스템(CLEAN) 구축 및 운영
: ('13)400 → ('14) 256백만원

(필요성)

ㅇ 산업부 출연/민간보조금 실집행기관의 재정집행 데이터를 자동연계하여 CLEAN시스템에 집계함으로써 재원의 통합관리 실현

○ 기재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연계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 관리 표준화 선도

(사업내용)

- CLEAN시스템 고도화 개발 및 운영 : 200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구분	내역	금액
SW 개발비	기능구축(DB:56개, 프로세스:58개) 47.3백만원, 이윤 10%, 부가세 4.7백만원	52,000,000
DB 구축비	소요공수 6.5개월, 인건비 45.5백만원, 제경비 60%, 이윤 10%, 부가세 4.5백만원	50,000,000
SW유지보수비	SW유지보수비 34.2백만원, 유지보수난이도 11.75%, SW운영비 55.2백만원, 부가세 8.6백만원	98,000,000
합 계		200,000,000

- 산업부 출연/민간보조금 집행실적 100% 집계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솔루션 유지보수 : 40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Sun M5000 등 서버 2식 SecuwayGate100B 보안장비 1식	358,267,500	25,029,725
Tibero Enterprise 등 솔루션 11식	259,500,000	19,480,000
합 계		44,509,725

- 89개 CLEAN시스템 공동운영기관 협의체 운영 : 16백만원

・공동운영기관 워크샵 개최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비, 인쇄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활용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출연금)

②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 : ('13)250 → ('14)100백만원*

*참고 : 기존 원자재상시경보통제시스템(WACS)구축사업(3558-301)의 폐지(산업부 유사사업통폐합 및 사업정비 일환)로 인하여 동 사업의 과제로 편입됨.

(필요성) 급변하는 원자재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경보시스템 등을 운용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전략적인 정책 반영에 필요함

(사업내용) 국제 원자재시장을 상시적으로 관찰·분석하는 모니터링시스템 운용 / 주요 16개 품목별 상시경보시스템 운용 / 산업원자재지수 운용 / 전문가 협의체 운영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항목			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	가격정보	1	9,000,000	9,000,000
	업무포탈	가격정보	1	15,000,000	15,000,000
		뉴스/분석정보	1	25,000,000	25,000,000
	유지보수		1	7,000,000	7,000,000
상시경보시스템 운용데이타 및 유지보수			1	30,000,000	30,000,000
산업원자재지수 운용데이타 및 유지보수			1	4,000,000	4,000,000
원자재브리프/전문가협의체/서버장비			1	10,000,000	10,000,000
합 계					100,000,000

③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3)113 → ('14)65백만원

(필요성) 광업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 광업정보시스템 : 광업권 설정출원, 등록, 행정처분, 민원발급 등 지원 관리

(사업내용) 광업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단순 사항 시스템 기능개선, DB관리 등 기술지원

⇨ 유형1(운영및유지보수), 유형2(운영및유지보수), 비목(연구개발비)

내 용	금 액(원)	비 고
▪ HW 유지관리 (도입비×유지관리요율)	1.6백만 (23백만×7%)	통전센터 이전 후 불용처리 예정인 HW 제외
▪ 상용SW 유지관리 (도입비×유지관리요율)	11.0백만 (137.5백만×8%)	DBMS 항목은 '14년 통전센터로 이관
▪ 시스템 운영 (투입공수)	52.4백만 (초급12MM)	제경비 18% 기술료 없음
계	**65백만**	

④ 신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기능보완 및 운영/유지보수 : ('13)0 → ('14)35백만원

(필요성) OECD에 '14년부터 BD4 기준에 부합하는 FDI 통계제출 예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활동 상황의 체계적 관리 및 관련 현황의 효율적인 파악 도모

(사업내용)

ㅇ旣구축된 시스템의 무상 유지 보수 기간(구축 후 1년) 종료 후, 효과적인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작성 및 외국인 투자 기업 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보완* 및 유지 보수 추진

* 추가 투자 현황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조사에 필요한 필수 기능 보완

ㅇ위 유지 보수 및 일부 기능 보완을 위해 Kotra에 민간 보조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통계를 수집 가능
- INSC(외국인투자신고·등록시스템)를 Kotra에서 관리하고 있고, 신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또한 Kotra에 구축되어 있는바, 투자 통계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동 시스템의 운영·보완 또한 Kotra에 대한 민간 보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작성에 필수적인 경영실태 조사 기능 등 보완 : 25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민간경상보조)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형태	품질	언어	
분석	94,511	65.3	0.67423	1	1.05	-	4,369,117
설계	129,382					-	5,981,156
구현	159,177					0.8	5,886,831
시험	125,357					0.8	4,636,069
개발금액 = (개발원가 + 이윤(개발원가의 10%)) × 1.1(VAT)							25,256,539
(십만단위 절사)							25,000,000

-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10백만원

⇨ 유형1(운영 및 유지보수), 유형2(운영 및 유지보수), 비목(민간경상보조)

장비명	도입비	유지보수비
Web서버 등 서버 3식	128,700,000	6,435,000
WebtoB 등 SW 4식	68,310,000	4,098,600
합 계		10,533,600
(십만단위 절사)		10,000,000

⑤ 무역구제정책 DB기반구축 및 정보시스템 구축 : ('13)0 → ('14)200백만원

(필요성) FTA 확대 등 전면적인 수입개방과 덤핑 등 불공정 무역거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 인프라 확충이 필요. 특히, 무역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무역안전망으로서 무역구제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자료의 DB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

(사업내용)

○기초자료 수집 및 DB화 추진

・무역위원회가 관리 축적하고 있는 off-line 조사자료의 DB화

<DB자료 세부내역>

내 용
・정책용역 ・무역조정지원 ・산업경쟁력 조사 ・공정무역연구 ・무역구제제도 운용자료집 ・업무매뉴얼, 법규, 규정집 ・산업피해조사 ・세이프가드 조치 ・업무매뉴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업무매뉴얼

○DB 관리시스템 구축

・각 업무별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구축

・세부업무별 독립적인 항목관리 기능 구축

・다양한 역할기반 접근권한 보안 관리기능 구축

・각 종 조사업무에서 발생되는 자료의 등록 및 검색기능 구축

・등록자료의 장기보존문서(PDF/A-1) 변환기능 구축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구분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	금 액
인건비	고급기술자 3M/M 중급기술자 6M/M 초급기술자 12M/M	174,000,000
직접비	여비, 인쇄비, 시스템 사용비 등	10,000,000
간접비	PDF변환 솔루션 1식	16,000,000
합 계		200,000,000

⑥ 통상회의관리시스템 구축 : ('13)0 → ('14)500백만원

(필요성) 통상관련 중요문서(FTA협상자료, 대외비, 비밀 등)의 생성, 보관, 유통 시 보안위험에 대한 대책마련 및 체계적 회의자료 관리 필요

○현재까지 통상 관련 회의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통상회의정보 수집, 생성, 보관에 대한 전자적 보안대책 수립

○국정원 보안기준에 부합하는 중요문서(대외비 이상) 유통 보안대책마련

○비전자 문서 송, 수신 시 발생하는 시간지연 해소

(사업내용)

○통상(FTA 등) 관련회의문서 등 관련사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여 중요협상관련 자료 보안강화 및 향후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

○'13년 구축예정인 산업부 비밀관리시스템 전자문서를 비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유관부처에 전달하는 전자적 유통 시스템 구축

- 문서관리(암/복호화) : ('14년) 200백만원

· 중앙집중 문서관리 서버 및 클라이언트(200USER)

· 서버 및 클라이언트 단말 저장 파일 암호화

· 파일반출 승인, 이력관리 및 디스크 관리

· 서비스 및 위배내역/반출내역/결재이력 등 로그관리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개발원가	개발비
단가	108,857	137,504	183,339	143,233	572,933	
금액	28,444,334	35,929,795	57,487,777	44,912,139	166,774,046	200,128,855

근거	FP	규모	유형	언어	품질	적용이윤
계수	402.00	0.65	1.00	1.20	1.00	0.20

- 통합 로그인 연동 : ('14년) 5백만원

· SSO, GPKI SSL설치, 통합로그인 조직정보 연동

· 통신구간 암호화 등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자산취득비)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개발원가	개발비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금액	921,482	1,163,975	1,241,581	969,985	4,297,022	5,156,426

근거	FP	규모	유형	언어	품질	적용이윤
계수	15.00	0.65	1.00	0.80	1.00	0.20

- 사용자 요청 분산처리기능 : ('14년) 45백만원

· 인증 및 운영 데몬 분산처리

· 파일 서버 제어용 데몬 분산처리

· 세션 유지 기능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개발원가	개발비
단가	94,511	119,382	159,177	124,357	497,427	
금액	7,986,180	10,087,779	10,760,365	8,406,533	37,240,857	44,689,028

근거	FP	규모	유형	언어	품질	적용이윤
계수	130.00	0.65	1.00	0.80	1.00	0.20

- 단말 원격통제 기능(중요자료삭제 등) : ('14년) 15백만원

· 중요자료저장 폴더 설정 및 접근통제 기능(이동식저장매체복사방지)

· 단말 분실, 탈취 시 중요자료 원격삭제 기능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개발원가	개발비
단가	108,857	137,504	183,339	143,233	572,933	
금액	2,405,740	3,038,838	4,051,792	3,165,449	12,661,819	15,194,183

근거	FP	규모	유형	언어	품질	적용이윤
계수	34.00	0.65	1.00	1.00	1.00	0.20

- 유관부처 문서유통 연계 기능 : ('14년) 31백만원

· 유관기관 보안 모듈 관리

· 문서 송신 및 원격 출력 기능

· 전자 문서 저장 및 관리 기능

⇨ 유형1(구축), 유형2(시스템개발), 비목(연구개발비)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개발원가	개발비
단가	108,857	137,504	183,339	143,233	572,933	
금액	5,023,751	6,345,810	8,461,095	6,610,203	26,440,858	31,729,030

근거	FP	규모	유형	언어	품질	적용이윤
계수	71.00	0.65	1.00	1.00	1.00	0.20

- **이중화구성 웹/지원 서버 : ('14년) 30백만원**
  · HP DL360p G8 X 2식
  · 서버 이중화 솔루션 1식
  ⇨ 유형1(구축), 유형2(장비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파일 처리 및 문서유통용 연계서버 : ('14년) 52백만원**
  · 문서유통용 연계서버 HP DL360p G8 X 2식
  · 회의자료 파일처리 서버 HP DL360p G8 X 2식
  ⇨ 유형1(구축), 유형2(장비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자료저장(문서) 스토리지 : ('14년) 100백만원**
  · 유통문서 저장장치 IBM System Storage X 3식
  · 회의자료 저장/백업용 저장장치 IBM System Storage X 2식
  ⇨ 유형1(구축), 유형2(장비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로드밸런싱 스위치 : ('14년) 22백만원**
  · 네트워크 스위치, 부하분산
  ⇨ 유형1(구축), 유형2(장비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정보보호체계 구축 : ('13)500 → ('14)326백만원

① 정보보호 솔루션·보안장비 구축 : ('13)350 → ('14)222백만원

(필요성)

○FTA 협상 증가 등 외교문서 증가에 따라 문서위변조방지를 위한 DRM 시스템 구축

○APT공격, 스피어피싱 등 고도화 되는 외부해킹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유해 트래픽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사업내용)

○문서유출을 대비하여 부내생성 문서암호화(DRM)를 적용, 비인가된 외부 식별방지

○인터넷망을 통해 부내 유입되는 트레픽을 모니터링 및 분석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DRM 구축	2식(업무망, 인터넷망) × 50백만원	100백만원
DRM 관리서버	2EA × 11백만원	22백만원
APT대응 트래픽분석장비	1EA × 100백만원	100백만원
합 계		222백만원

② 서버 보안백신·정보보호 프로그램 구입 : ('13)150 → ('14)104백만원

(필요성) 업무포털 등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암호화 및 서버보안 프로그램 구입 등 백신 License 유지

(사업내용) 신규Open 업무(해외자원개발시스템 등)에 적용할 서버보안 및 DB암호화 License 확보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항목	내역	금액
백신	1800EA(PC) × 2.1만원 (V3)	61백만원
	29EA(서버) × 32만원 (V3)	9백만원
DB 암호화	2식 × 17백만원 (4Core기준)	34백만원
합 계		104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업무포털 등 부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고
- 모바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선진 업무 환경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CLEAN 시스템, 광업정보시스템 등 정책업무 수행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
- 개별 부서 단위로 분산구축 된 정보시스템을 조직 전체 차원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사용편의성 제고

○ 정보보호체계 구축

- DDoS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공격의 지능화·정교화 추세에 따른 최신 보안 솔루션 도입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시스템 구축**(3,159)	**3,291**	**3,275**	**3,159**	**△116**	**△3.5**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1,857	1,689	1,677	△12	△0.7
▪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944	1,086	1,156	70	6.4
▪ 정보보호체계 구축	490	500	326	△174	△34.8
□ **비목**(3,159)	**3,291**	**3,275**	**3,159**	**△116**	**△3.5**
○연구개발비(260-00)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HW 및 상용SW 유지보수 - 통전이전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디지털도서관 운영유지보수 - 원자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광업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무역구제정책 DB기반구축 - 통상회의관리시스템구축	1,728	2,155	2,061 (857) (468) (158) (통전이체) (11) (100) (65,일부통전이체) (200) (202)	△94	△4.4
○민간경상보조(320-01) - 신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운영	454	-	35	35	순증
○출연금(350-01) - 재정집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400	400	256	△144	△36
○자산취득비(430-01) - 내용년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 통전 이전시스템 HW증설 - 디지털도서관 구축 - 통상회의관리시스템구축 - 정보보호솔루션·보안장비구축	709	720	807 (150) (통전이체) (33) (298) (326)	87	1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의 원활한 행정·정책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32.7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9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0.8 ▪정보보호체계 구축 : 5
'14	31.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8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1.5 ▪정보보호체계 구축 : 3.3
'15	31.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8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1.5 ▪정보보호체계 구축 : 3.3
'16	31.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8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1.5 ▪정보보호체계 구축 : 3.3
'17	31.6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16.8 ▪실물경제 정책업무 정보화 지원 : 11.5 ▪정보보호체계 구축 : 3.3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23조, 제46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 추진경위

- ‘e-산자부’ 선언 (‘00)
- 산자부 중장기정보화추진전략 수립 (‘01)
- 산업자원 지식행정체제 확대 중장기정보화추진계획 수립 (‘03)
- 산업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05)
- 산업자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정보전략계획 수립 (‘06)
- 산업자원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적용 기본계획 수립 (‘07)
- 지식경제부 정보화전략 수립 (‘08)
-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12)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산업통상자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40	35	33	33	3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불용(93백만원) : 사업기간 완료직전에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불용 처리함

○ ‘11년 이월(53백만원) : ’정보화사업통합감리‘, ’사이버홍보관활성화‘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 ‘12년 이월(125백만원)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멀티미디어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UX’, ’MI’ 사업기간 미종료로 이월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0** ( )	- ( )	- ( )	40 ( )	**38** ( )	0.79 ( )	0.93 ( )
’11년	**35** ( )	0.79 ( )	- ( )	36 ( )	**35** ( )	0.53 ( )	0.01 ( )
’12년	**33** ( )	0.53 ( )	- ( )	33 ( )	**32** ( )	1.25 ( )	0.0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근 평가년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기관	비고
2013년	보통	70.0	기획재정부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 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없음

변화관리능력개발(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변화관리능력개발	150	209	257	48	23%

* 사업코드 : 19 - 11 - 00 - 110 - 116 - 7100 - 7132 - 303
* 담 당 자 : 정책기획관(이인호), 창조행정담당관(이용필, 044-203-5530), 주무관(서보용, 044-203-55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5~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력기관의 변화관리역량 강화와 산업·통상·자원 분야 변화관리과제추진 및 변화관리능력 개발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 문화 정착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 및 교육 필요

○ 규제를 개선하고 선제적 갈등대응시스템을 확립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억원

○ 즐겁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사업: 3,400만원

-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리더십, 대인관계, 문화, 건강 강좌 등)
  * 자기개발 강좌 1,800만원 = 150만원×12회
  * 선배에게 듣는 생활의 지혜 600만원 = 50만원x12회
- 각계 저명인사 초청 全직원 대상 교양 강연회 개최
  * 1,000만원 = 150만원 × 6회 + 소모품준비 100만원

○ 창의적인 정책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사업: 6,060만원

- 직원들의 자발적 연구모임 지원 : 960만원
  * 연구모임 지원 540만원 = 15만원 x 9개 x 4회
  * 우수연구모임 포상 100만원 = 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 연구집 발간 320만원
- 부내 크로스미팅 지원 : 600만원
  * 600만원 = 50만원 x 2팀 6회
- 국내외 변화관리 모범 기관·기업 등 연수 : 2,200만원
  * 국내연수 500만원 = 50만원×10명
  * 해외연수 1,700만원 = 170만원×10명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2,300만원
  * 2,300만원 =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20만원×20명)+장소임대료 및 회의준비 등 100만원)×4회

○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 : 1,540만원

- 이달의 우수부서 : 1,440만원
  * 1,440만원 = 30만원 x 4개부서 x 12회
- 올해의 산업자원인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x 2명 + 20만원 x 2명

② 유관기관 역량평가 과제개발 : 0.42억원

○ 역량평가과제 개발 및 보완 : 42백만원

* 평가과제 1개 set 개발비 29.5백만원 + 기존 과제 보완 12.5백만원 = 42백만원 (set당 4개 세부과제로 구성)

③ 규제심사 및 갈등관리 지원 : 1.05억원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5,800만원

- 규제심사위원회(횟수 및 참석율은 '12년 기준) : 2,400만원

* (대면회의) 12명×7회×25만원×0.8(참석율) = 1,680만원
* (서면회의) 12명×6회×10만원 = 720만원

- 갈등관리위원회 : 3,400만원

* (대면회의) 10명×12회×25만원×0.8(참석율) = 2,400만원
* (발제수당) 2명×12회×20만원 = 480만원
* (현장방문) 10명×4회×13만원 = 520만원

○ 규제개혁교육 및 갈등관리 교육 : 500만원

- 규제 및 갈등관리 통합 교육 : 200만원

* 강사료 90만원, 인쇄비 30만원, 임차료 80만원

- 갈등관리 브라운백 미팅 : 300만원

* 75만원(강사료 30만원 + 도시락구입비용 45만원) x 4회 = 300만원

○ 갈등영향분석 실시 : 4,200만원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 1,400만원 × 3개 과제 = 4,200만원

□ 지원 필요성

○ 변화관리 교육-학습-연구체계 구축으로 변화-쇄신의 체질화 유도 및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창조적 실용주의 문화 정착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및 성과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평가 필요

-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급이나 안전관리 업무 및 무역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주요 협·단체 또한 관련 산업 정보 제공 및 정부 위탁 사업 수행 등 공공 기능 수행

○ 자체규제심사위원회 및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규제의 품질 제고, 규제개혁 교육, 갈등의 합리적 해결 도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변화관리능력개발**	**150**	**209**	**257**	**48**	**23**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120	120	110	△10	△8
▪ 유관기관 역량강화	-	59	42	△17	△29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지원	30	30	105	75	250
□ **비목**(합계)	**150**	**209**	**257**	**48**	**23**
○일반수용비(210-01)	47	99	84	△15	△15
○임차료(210-07)	11	11	3	△8	△73
○기타운영비(210-16)	36	35	18	△17	△49
○국내여비(220-01)	16	16	5	△11	△69
○국외여비(220-01)	11	17	17	-	-
○사업추진비(240-01)	19	20	22	2	10
○연구개발비(260-00)	-	-	92	92	-
○포상금등(310-03)	11	11	16	5	4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항상 연구하고 변화에 도전하는 인재 양성

○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지식경제부인의 상을 유지·발전시키고 끊임없이 쇄신을 추구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2.1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2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6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0.3
‘14	2.6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1
‘15	2.6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1
‘16	2.6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1
‘17	2.6	○ 변화관리 및 혁신교육 : 1.1 ○ 유관기관 역량강화 : 0.4 ○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 1.1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변화관리능력개발

○ 지원근거 :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무회의 의결사항

-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서의 제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04. 9. 14 국무회의시 공무원교육훈련예산의 확충을 결정

○ 추진경위

-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체계를 위한 행동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시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하여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 확보 당위성을 제안
-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지방경제, 서민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도우미로서 舊지경부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직원 능력개발 사업으로 반영

② 유관기관 역량강화 제도 운영

○ 지원근거 :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

○ 추진경위

- '11.9.15 정전사태 발생시 엄청난 국민생활 혼란을 초래하면서 공공기관 임원의 위기대응능력 등의 중요성 대두
- '12.1.26 지식경제부 산하 15공공기관의 24개 직위를 핵심보직으로 선정하고 역량평가를 시행
- 언론 등에서 역량평가 확대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경부 산하 전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후보자로 역량평가 대상을 확대('12.3월)

③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지원

○ 지원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 추진경위

<규제>

-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98.3.1)되면서 본격적인 규제개혁이 시작되었으며, 규제 신설·강화시 자체규제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령제개정 절차상 필수 절차로 정착됨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

<갈등관리>

-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07.2.12)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2013년 밀양송전선로 건설 등 대규모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통령은 갈등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무조정실은 외부기관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갈등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부처로 통보

- 특히, 산업부는 송전선로 건설,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과제가 다수인 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변화관리능력 개발	1.9	2.2	1.5	2.1	2.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년) 이월 : 지경부 직원연락망 스마트폰 어플 개발 용역 발주 시 납기 미도래로 차년도 이월 / 전용 : 경상경비절감과 자체예산 절감

○ (11년) 불용 : 대외 환경 변화(김정일 사망)로 인한 해외 출장 취소 등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1.9	-	-0.1 +0.1	1.9	1.8	0.2	0.1
'11년	2.2	0.2	-	2.4	2.1	-	0.3
'12년	1.5	-	-	1.5	1.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구분	주요업무	수행 주체
수행방향 설정	당해연도 수행방향 설정	산업부
▼		
계획 수립	당해연도 계획 수립	산업부
▼		
사업 수행	계획에 따라서 사업 수행	산업부
▼		
실적 관리	수행 결과를 변화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관리	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내외 교육훈련(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내외 교육훈련	205	232	213	△19	△8.2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7-402

*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김용래), 인사팀장(남명우, 044-203-5060), 주무관(이정훈, 044-203-506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3년～계속 * 조직개편으로 舊 외통부로부터 국내외 교육훈련비 일부 이체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국외훈련 과정 운영

○ 舊 외통부 국외훈련 과정에 선정되어 旣 국외훈련중인 훈련생('14년 기준 4명)에 대한 훈련비 지원(계속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

* 다만, '14년도에 확보한 신규 국외훈련 T/O 2명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바, 기재부 협의사항대로 산업부 예산 중 轉用을 통해 신규 훈련비 마련 예정

(또는 旣 편성된 계속 사업비 일부를 신규 훈련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활용)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旣 국외 훈련생 지원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에 훈련중인 4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93백만원

▪ 산출내역(환율 1불=1,120원, 100엔=1.1538불, 1유로=1.3043불)

- 구OO 사무관(~'14.7월 미국 국외훈련)=46,861,920원

* 2,463불*7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3인(항공료)+18,000불(학자금)+600불(귀임료) =41,841불=46,861,920원

- 김OO 사무관(~'14.5월 일본 국외훈련)=41,079,662원

* 283,890엔*5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항공료)+1,560,000엔(학자금)+300불(귀임료) =41,079,662원

- 채OO 사무관(~'14.7월 스페인 국외훈련)=48,218,922원

* 2,021유로*7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3인(항공료)+13,800유로(학자금)+ 600불(귀임료)=48,218,922원

- 조OO 사무관(6월까지 미국 훈련 후 스페인으로 전임)=57,225,864원

* 2,463불*6개월(체재비+의료비)+2,021유로*6개월(체재비+의료비)+2,000불(항공료) +18,000불(학자금)+500불(전임비)=57,225,864원

○ 환율 변동(원화가치 절하) 및 동반가족 증가에 대비한 준비금 20백만원

*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10% 하락시 추가적으로 약 20백만원이 필요

□ 지원 필요성

○ 정부조직개편 후 산업부가 통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

- 舊 외통부가 외교·통상인력양성을 위해 국외훈련과정을 운영한 점을 감안시, 정부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부여된 산업부도 양질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을 계속적으로 운영 필요

- 舊 외통부 국외훈련 과정에 선정되어 旣 국외훈련중인 훈련생('14년 기준 4명)들을 위한 훈련비는 당연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내외 교육훈련**	**205**	**232**	**213**	**△19**	**△8.2**
▪ 국내외 교육훈련	205	232	213	△19	△8.2
□ **비목**(합계)	**205**	**232**	**213**	**△19**	**△8.2**
○국제화여비(220-03)	125	142	127	△15	△10.6
○보상금(310-01)	80	90	86	△4	△4.4

* '14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체재비, 항공료, 귀임료, 전임료, 생활준비금은 국제화 여비(220-03)로, 등록금은 보상금(310-01)으로 분류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양질의 통상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

-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T/O 확대를 위해 안행부와 계속 협의

* 산업부는 외교부의 국외훈련 T/O(연 30여명)중 통상전문가 양성 T/O 5명을 산업부로 배정해 줄 것을 안행부에 요청 → 안행부는 산업부에 '14년 신규 훈련 T/O 2명 배정 완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13	2.32	旣 훈련중인 6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80백만원(6*30백만원) 신규 훈련생 1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40백만원(1*40백만원) 환율 변동(원화가치 절하) 및 동반가족 증가에 대비한 준비금 12백만원
'14	2.13	旣 훈련중인 4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93백만원 환율 변동(원화가치 절하) 및 동반가족 증가에 대비한 준비금 20백만원
'15	2.4	旣 훈령생 3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50백만원(3*50백만원) 신규 훈련생 2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80백만원(2*40백만원) 환율 변동(원화가치 절하) 및 동반가족 증가에 대비한 준비금 10백만원
'16	2.2	旣 훈령생 4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60백만원(4*40백만원) 신규 훈련생 2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60백만원(2*30백만원)
'17	1.81	旣 훈령생 4인에 대한 체재비, 학자금 등으로 180백만원(4*45백만원) 환율 변동(원화가치 절하) 및 동반가족 증가에 대비한 준비금 1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3호. 생략
  4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7호. 생략

-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추진경위

- '13년 정부조직개편으로 舊 외교통상부의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외훈련 예산 일부 이체(232백만원)

- '13년 기준 旣 훈련중인 자 6인, 신규 훈련생 1인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외훈련 과정 운영

- 향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통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안행부, 기재부 등과 국외훈련 T/O 및 예산 협의 예정('13년~계속)

< 예산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국내외 교육훈련	-	-	205	232	21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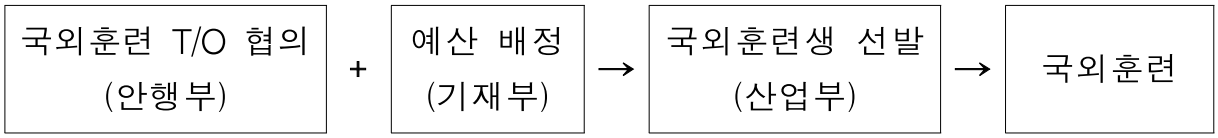

* 연중 국외훈련생 관리 및 훈련비 집행(산업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794	720	549	△171	△23.8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42-317

* 담당자 : 정책기획관(이인호), 정보관리담당관(신성필, 044-203-5550), 사무관(김용완, 044-203-55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관리담당관실

2. 사업목적

□ 사이버공격이 지능화・정교화됨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보안관제 솔루션 및 안정적인 운영환경 보장을 위한 기존 운영시스템 성능개선

○ 최근 사이버공격이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 기능 강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사이버안전시스템 고도화 구축 : (’13) 690 → (’14요구) 447백만원

- 대용량의 보안이벤트로부터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초고속 수집·검색·분석이 가능한 빅 데이터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287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에너지 등 공공기관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전지수 및 해킹방어 경진대회 시스템 구축 : 160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세부 산출내역 (백만원) >

시스템	주요기능 및 규격	수량	금액
□ **대용량 이벤트 분석시스템**			
○ 대용량 이벤트 관리시스템	- 정보보호설비 보안이벤트 수집·분석	1	250
○ 대용량 이벤트 수집서버	- CPU : 2*4Core 3.3GHz 이상 - MEM : 32GB, - HDD : 600GB*8EA	2	22
○ 대용량 이벤트 검색서버	- CPU : 4*8Core 2.6GHz 이상 - MEM : 32GB, - HDD : 600GB*2EA	1	15
□ **사이버안전지수 시스템**	- 사이버안전지수 운영(S/W)	1	99
□ **해킹방어 경진대회 시스템**	-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해킹문제 등	1	61
합 계			**447**

②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 (’13) 30 → (’14요구) 102백만원

- 24시간 무중단 운영 및 보안관제업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사용년수가 일정기간 경과된 일부 노후설비 단계적 교체 : 102백만원

  ⇨ 유형1(구축), 유형2(장비 도입), 비목(자산취득비)

< 세부 산출내역 (백만원) >

시스템	주요기능 및 규격	수량	금액
□ **교육장 PC**	- CPU : 3.2GHz 이상 - MEM : 4GB, - HDD : 500GB	36	33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 Throughput : 400Mbps 이상	2	50
	- Throughput : 200Mbps 이상	2	19
합 계			**102**

□ 지원 필요성

○ ’09년 7.7DDoS, ’10년 스턱스넷, ’11년 금융권 해킹사고, ’12년 샤문 바이러스에 이어, ’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 해킹 기법이 진화하고 있어 최신 보안솔루션 발굴 등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필요함

- 보안관제에 필요한 보안이벤트가 점차 대용량화되고 있어 수집·분석·검색속도 지연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빅 데이터의 분석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관제솔루션 필요

- 에너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의해킹 경진대회와 사이버 안전지수를 기관 규모에 따라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보안관제업무를 365일 24시간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용년수가 도래한 노후설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549)	**794**	**720**	**549**	**△171**	**△23.8**
▪ 시스템 고도화 구축	737	685	447	△238	△34.7
▪ 노후설비 교체	57	35	102	67	191.4
□ **비목**(549)	**794**	**720**	**549**	**△171**	**△23.8**
○ 기타유형자산(430-01)	794	720	549	△171	△23.8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에너지·무역·산업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안정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최근 사이버공격이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보안관제 효율을 극대화하고 운영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스템 고도화 구축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취약점분석을 위한 최신 보안솔루션을 발굴·구축하여 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7.2	시스템 고도화(685백만원) 노후설비 교체(35백만원)
'14	5.49	시스템 고도화(447백만원) 노후설비 교체(102백만원)
'15	5.49	시스템 고도화(400백만원) 노후설비 교체(149백만원)
'16	5.49	시스템 고도화(400백만원) 노후설비 교체(149백만원)
'17	5.49	시스템 고도화(400백만원) 노후설비 교체(149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제1항** :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2**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13조제1항(산업부 훈령 제91호)

○ 추진경위

- '06. 05월 :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의장 : 국가정보원장) 의결

* 기존의 국방, 금융, 행정, 통신, 안보분야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핵심분야(에너지, 교통, 교육, 보건, 외교)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결정

- '07. 07월 : 산업자원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립 계획수립
- '07. 1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정(훈령 제128호)
- '08. 08월 : 사이버안전시스템 구축 및 센터 개소(26개 기관)
- '10. 01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58호)
- '10.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14개 기관)
- '11. 01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7개 기관)
- '12. 02월 : 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개정(훈령 제91호)
- '12. 06월 : 사이버안전서비스 대상기관 확대(3개 기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및운영	8	7	8	7.2	5.4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 : '10년(1백만원), '12년(6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 ( )	( )	( )	8 ( )	7.99 ( )	( )	0.01 ( )
'11년	7 ( )	( )	( )	7 ( )	7 ( )	( )	( )
'12년	8 ( )	( )	( )	8 ( )	7.94 ( )	( )	0.06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76.0)'으로 평가

- 평가시기 : 2013년 5월
- 평가기간 : '10년 ~ '12년 사업결과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외국사례

- 미국 : 1)NERC에서 2)ES-ISAC 구축·운영

  · 미연방정보국 및 CIA의 사이버 위험정보 제공과 회원사 정보시스템 보호

  ※ NERC는 1965년 정전사태 이후 설립되어 북미의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Co-ordinator 역할 수행

1)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uncil): 1965년 정전상태이후 설립되어 전기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수행(美 전력ISAC 운영기관)

2) ES-ISAC(Energy-Sector 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 "에너지분야 정보공유분석센터" 에너지 분야 사이버안전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최상의 보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분야별 센터

· 미국은 현재 10개 분야에 정보공유분석센터 운영중

※ Banking&finance, Chemicals, Emergency, Food, Government, Info&Comms, Transport, Water, Energy, Other(Real Estate)

○ 국내사례

- 국가(NCSC) 및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

·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 정책수립(기획·조정)

· 분야별 사이버안전센터는 해당 소관기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위협 정보수집·분석·전파

※ 행정, 국방, 외교, 국토, 보건, 산업, 교육, 통신, 금융, 재정, 노동, 법무 등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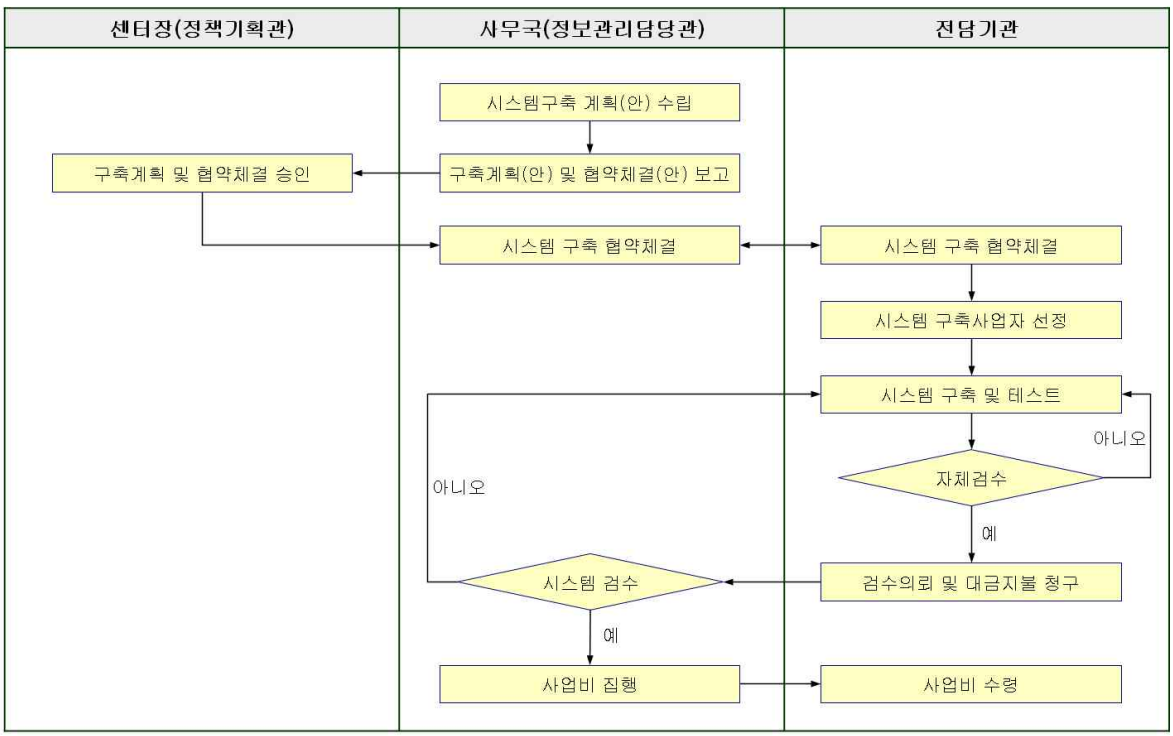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주요 사업성과

○ 적용물량 및 산출내역

참고1 해당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 1항(정보공유·분석센터)**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 1항(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산업통상자원 사이버안전센터 회원기관 현황

□ **사이버안전 대상기관 :** 총 47개 기관

분야	기 관 명	기관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공사협회, 원자력문화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기술, 에너지관리공단, 광해관리공단	26
무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4
산업□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다이텍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강원랜드	17
합 계		47

참고3 사이버안전센터 주요 사업성과

□ 사이버방어의 최접점인 보안관제 업무생산성 향상

○ DDoS공격·스턱스넷 웜·천안함사태·G20 정상회의·북한 연평도 포격·3.20 및 6.25 사이버테러 등에 따른 사이버공격에 대비하여 **유기적인 공조체계** 확립

○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으로 센터 개소 이후 **16,759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사전 탐지('08)796, ('09)2933, ('10)4300, ('11)4345, ('12)4385)

○ 이슈화되는 공격의 중점관제를 위해 사이버공격 **탐지룰 자체 개발(262건)**하여 사이버공격 탐지능력 향상(('08)17, ('09)33, ('10)52, ('11)70, ('12)90))

□ 사이버침해사고 대응력 강화로 피해확산 최소화

○ 발전제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홈페이지 등의 **보안관리지침을 수립·배포**함으로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안강화 유도

○ 침해사고 또는 이상징후시 즉각적인 사고분석·기술지원(1620건)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08)106, ('09)202, ('10)175, ('11)400, ('12)737)

□ 취약점분석·평가 컨설팅 및 교육시행으로 정보보호 수준향상

○ 취약점점검 컨설팅을 통한 보안의식수준 제고 및 자체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으로 보안수준 향상(('08)1개, ('09)7개, ('10)16개, ('11)31개, ('12)30개 시설)

○ CISO 교육과정 개설, 전문지식 제고와 정보보안 **고급인력의 양성**(년 20명)

※ 최고정보보안관리자과정(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 회원기관의 교육니즈 및 최신 보안기술을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기관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 시행(61회, 1694명 교육이수)

※ ('08)1회 27명, ('09)12회 234명, ('10)14회 347명, ('11)16회 616명, ('12)18회 470명 이수

참고4 적용물량 및 산출내역

□ 소요예산 산출내역

(백만원)

시스템	주요기능 및 규격	수량	금액
□ 대용량 이벤트 분석시스템		**4**	**287**
○ 대용량 이벤트 관리시스템	- 정보보호설비 보안이벤트 수집·분석	1	250
○ 대용량 이벤트 수집서버	- CPU : 2*4Core 3.3GHz 이상 - MEM : 32GB, - HDD : 600GB*8EA	2	22
○ 대용량 이벤트 검색서버	- CPU : 4*8Core 2.6GHz 이상 - MEM : 32GB, - HDD : 600GB*2EA	1	15
□ 사이버안전지수 시스템	- 사이버안전지수 운영(S/W)	**1**	**99**
□ 해킹방어 경진대회 시스템	-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해킹문제 등	**1**	**61**
□ 노후설비 교체		**40**	**102**
○ 교육장 PC	- CPU : 3.2GHz 이상 - MEM : 4GB, - HDD : 500GB	36	33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 Throughput : 400Mbps 이상	2	50
	- Throughput : 200Mbps 이상	2	19
합 계		**46**	**938**

청사이전지원(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청사이전지원	-	-	4,745	4,745	순증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3-307
* 담 당 자 : 운영지원과장(김용래), 재무팀장(신재행, 044-203-5080), 주무관(진세운, 044-203-50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14년~2015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47.5억원('14년)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청사이전으로 인해 낮아진 직원의 복리 후생 및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백만원)

목-세목		산출 근거
○ 청사이전지원	4,745	
· 복리후생비(210-12)	3,451	○ 세종시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자 및 계약직등을 대상으로 지급 - 20만원 매월 정액 지급(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내여비(220-01)	1,294	○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이전 지원비 - 화물량 5톤 이하 실비, 5톤~7.5톤 이하 실비의 50% 지원(공무원 여비규정 및 처리지침)

□ 지원 필요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13.12월말 경기도 과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 이전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

○ 변화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이주지원비 및 이사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청사이전지원**	**-**	**-**	**4,745**	**순증**	**순증**
▪ 이주지원비	-	-	3,451	순증	순증
▪ 이사비	-	-	1,294	순증	순증
□ **비목**(합계)	**-**	**-**	**4,745**	**순증**	**순증**
○복리후생비(210-12)	-	-	3,451	순증	순증
○국내여비(220-01)	-	-	1,294	순증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이주지원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

○ (이사비) 「공무원 여비규정(안행부)」의 규정에 따라 운영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	해당없음
'13	-	해당없음
'14	47.5	이주지원비 : 34.5억원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 지원 : 12.9억원
'15	47.5	이주지원비 : 34.5억원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 지원 : 12.9억원
'16	-	해당없음
'17	-	해당없음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및 「공무원 여비규정(안행부)」

○ 추진경위

- '14년 예산 신규 반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청사이전지원	-	-	-	-	4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및 「공무원 여비규정(안행부)」의 규정에 준하여 사업 추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통상교섭실

통상교섭실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5,960**	**6,549**	**6,299**	**△250**	**△3.8**
○ 통상분쟁대응	575	780	850	70	9.0
○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5,385	5,769	5,449	△320	△5.5
【 합 계 】	**5,960**	**6,549**	**6,299**	**△250**	**△3.8**

통상분쟁대응(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통상분쟁대응	575	780	850	80	9.0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6-401

* 담 당 자 : FTA정책관(최동규), 통상법무과장(홍영기, 044-203-5770), 주무관(김성은, 044-203-577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9～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통상법무과

2. 사업목적

□ 우리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하고, 우리 정부가 피소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보호

□ 우리나라 및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및 통상 관련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상시 검토하고, 법적 대응조치 강구

□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간 통상 마찰을 예측하고, 사전적·사후적 대응책을 마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WTO 당사자 분쟁 대응[3]: 470백만원

※ 당사자 분쟁 2건 대응 기준
- 법률자문비(400백만원)
- 관련 출장비(65백만원): 총 14회 기준(과장, 담당관, 법률자문관)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의(22회, 5백만원)

○ 기타분쟁대응(WTO 3자참여 분쟁 및 FTA 분쟁포함)[4]: 273백만원

- 법률자문비(193백만원)
  · 3자참여 분쟁(110백만원), DSU 개정협상(40백만원), FTA 분쟁(30백만원), 기타(10백만원)
- 관련 출장비(총 17회, 75백만원)
  · 3자 참여분쟁: 8회
  · DSU 개정협상, FTA 분쟁, 기타: 9회
- 법률전문가, 외국 정부인사, 업계인사와의 업무협의(25회, 5백만원)

○ WTO/FTA 분쟁 모의재판[5]: 40백만원

- 행사 개최비용(오만찬 포함): 20백만원
- 관계자(채점위원, 자문위원, 패널리스트, 운영위원, 행사도우미 등) 수당 및 소모용품 구입: 20백만원

---

3) 우리나라가 직접 제소국/피소국으로 참여하는 WTO 분쟁(분쟁 건당 종료시까지 약 3-4년의 기간이 소요)
   * 현재 우리나라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관련 당사자 분쟁이 진행중이며,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관련 WTO에의 제소가 확실시됨

4) • WTO 3자참여 분쟁: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제소/피소)가 아닌 WTO 분쟁 중,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보호를 위해 참여하는 분쟁
   • FTA 분쟁: 기체결한 FTA 관련 분쟁 발생시 대응
   • 기타 분쟁: 기타 통상이슈 관련 법률자문 및 그 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포함

5) 국제 통상분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관련 전공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WTO/FTA 모의재판대회 개최
   ※ 2010-13년간 총 4회의 모의재판 대회가 개최됨. (1,2회: 서울대, 3회: 성균관대, 4회: 연세대에서 개최)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6]: 15백만원**

- 통상법 포럼 개최비용(반기별, 4백만원)
- WTO/FTA 분쟁 관련 인사 및 업무 유관자 접촉(8백만원)
- 통상 관련 참고책자 발간 및 도서 구입 등(3백만원)

○ **통상법 아카데미(신설)[7]: 52백만원**

- 교육과정 개설비용: 20백만원(총 12회 기준) * 2회(상·하반기)
- 비디오 촬영비, 인쇄비, 소모용품 구입 등: 10백만원
- 관련 업무 협의: 2백만원

□ **지원 필요성**

(WTO 당사자분쟁 대응 / 기타 분쟁대응)

○ 통상분쟁의 경우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긴요

- △한-미, 한-EU FTA 발효, △WTO DSU(분쟁해결양해) 개정 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 향후 2-3년간 우리나라와 관련된 WTO/FTA 분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WTO/FTA 분쟁 모의재판)

○ WTO/FTA 분쟁 모의재판은 통상분야 젊은 인재들을 발굴, '통상분쟁대응의 국산화'에 중장기적으로 기여하고, 통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

(통상법 아카데미)

○ 우리부의 통상기능 강화 및 통상분야 전문인력 육성·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부내 교육과정('통상법 아카데미') 개설

---

6) 통상법 포럼 개최 및 통상분쟁 통상법관련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통상분쟁 대응기반 구축

7) 우리부 주재관 지원 희망자, 수습 사무관, 통상 업무 담당직원 대상의, 통상 전문인력 육성·관리를 위한 통상법 교육과정

- 동 교육과정은 주재관 지원 희망자, 수습 사무관, 통상업무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통상법 아카데미는 당초 30명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100여명의 직원이 지원하는 등 부내 직원들의 통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내년도부터는 교육과정을 연간 2회(상・하반기) 개설할 예정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통상분쟁대응**	**575**	**780**	**850**	**70**	**9.0**
▪ WTO 당사자 분쟁 대응	161	232	470	238	102.6
▪ 기타 분쟁대응	334	452	273	△179	△39.6
▪ WTO/FTA 모의재판	38	40	40	-	-
▪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42	**56**	15	△37	△66.1
▪ 통상법 아카데미	-	**-**	52	52	순증
□ **비목**(합계)	**575**	**780**	**850**	**70**	**9.0**
○ 일반수용비(210-01)	472	606	666	60	9.9
○ 국외여비(220-02)	76	125	140	15	12
○ 업무추진비(240-02)	27	49	44	△5	△1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쟁이 발생시, 적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

- 국가간 통상분쟁은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분쟁 외에도, 검역· 환경·기술규제 등 분쟁이슈의 다양화에 대한 대비도 중요

○ 통상법 포럼, 통상법 브라운백 미팅 등 현재 추진중인 행사들의 활성화 및 내실 강화를 통해 관련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산업-통상간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인 통상대응능력 강화

○ 통상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통상법 아카데미 운영 및 WTO/FTA 모의재판 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7.80	o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5.94 o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1.34 o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52
'14	8.50	o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6.66 o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1.40 o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44
'15*	6.24	o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4.97 o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0.85 o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42
'16*	5.72	o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4.50 o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0.82 o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40
'17*	4.71	o WTO/FTA 분쟁대응 및 통상 관련 법률자문 3.51 o 분쟁대응 관련 국외출장 0.80 o 통상법 관련 행사 개최 및 분쟁관련 유관인사 접촉 0.40

*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일부 사업 축소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제17조 및 WTO 분쟁해결절차규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추진경위

- 사업 신설연도: 1999년

※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회원국간 무역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 규정(DSU)에 의거, WTO 패널 및 상소기구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상분쟁대응 사업이 신설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통상분쟁대응	9.8	9.0	8.5	7.8	8.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이용 2억원): WTO 미국 제로잉 분쟁(DS402)의 조기 종결로 차액을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이용

○ 2011년(불용 0.6억원): WTO 캐나다 쇠고기 분쟁(DS391)의 정지로 일부 불용 발생

○ 2012년(불용 2.7억원): 우리나라가 제소한 미국 도금강판-반덤핑 조치 분쟁 정지 및 캐나다가 제소한 쇠고기 수입 분쟁의 종료로 일부 불용 발생

※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 분쟁(DS391)
- 패널설치(2009.8.31), 협의에 따른 분쟁 최종종결(2012.6.19)

※ 도금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재심 제로잉 분쟁(DS420)
- 양자협의요청(2011.1.31), 패널설치요청(2012.2.9), 패널정지 (2012.6.12)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9.8 ( )	- ( )	△2.0 ( )	7.8 ( )	7.8 ( )	- ( )	0.0 ( )
'11년	9.0 ( )	- ( )	- ( )	9.0 ( )	8.4 ( )	- ( )	0.6 ( )
'12년	8.5 ( )	- ( )	- ( )	8.5 ( )	5.8 ( )	- ( )	2.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WTO/FTA 분쟁모의재판'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주관의 특정 학생층 대상 행사에, 외교부가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바, 일부 보조 또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10년 국회 예결위 2011년 예산검토보고서)

(우리부 입장)

- 동 행사 사업비는 정부 전액부담이 아니라, 정부(2010년 당시 외교통상부)와 국제경제법학회, 관련 대학이 공동부담

※ 행사 장소는 대학별 순환(1,2회: 서울대, 3회: 성균관대, 4회: 연세대)

- 동 행사에 대한 지원은 국제통상 분쟁 관심 제고는 물론, 향후 통상분쟁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 필요

○ 국내 법률자문가의 국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경비를 국외업무여비(220-02)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13년 국회 예정처 2012년 결산보고서)

(우리부 입장)

- 현재 '국내 법률자문가의 국외여비'를 국외업무여비(220-02) 목으로 집행중이며, '14년 예산편성시에도 국외업무여비 목으로 편성함(조치완료).

○ 사업 예산 불용이 과다하며 각 내역사업의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이 있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실소요에 맞게 내역사업별로 편성·집행할 필요 (‘13년 결산 산업위 소위)

(우리부 입장)

-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업무추진비는 분쟁 동향 파악,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소요되며, 이는 직접적인 분쟁대응 보다는 중장기적 분쟁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경우가 다수인바, 그간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내역사업으로 편성·운영해옴.

※ 통상분쟁대응 사업은 △WTO 당사자 분쟁 대응, △기타분쟁대응, △WTO/FTA 모의재판, △통상분쟁 대응기반 마련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

- 향후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쟁대응과 관련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사업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목을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편성 및 집행토록 하겠음(지적사항 수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붙임 WTO 분쟁해결 절차도 참조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붙임. WTO 분쟁해결 절차도

붙 임 WTO 분쟁해결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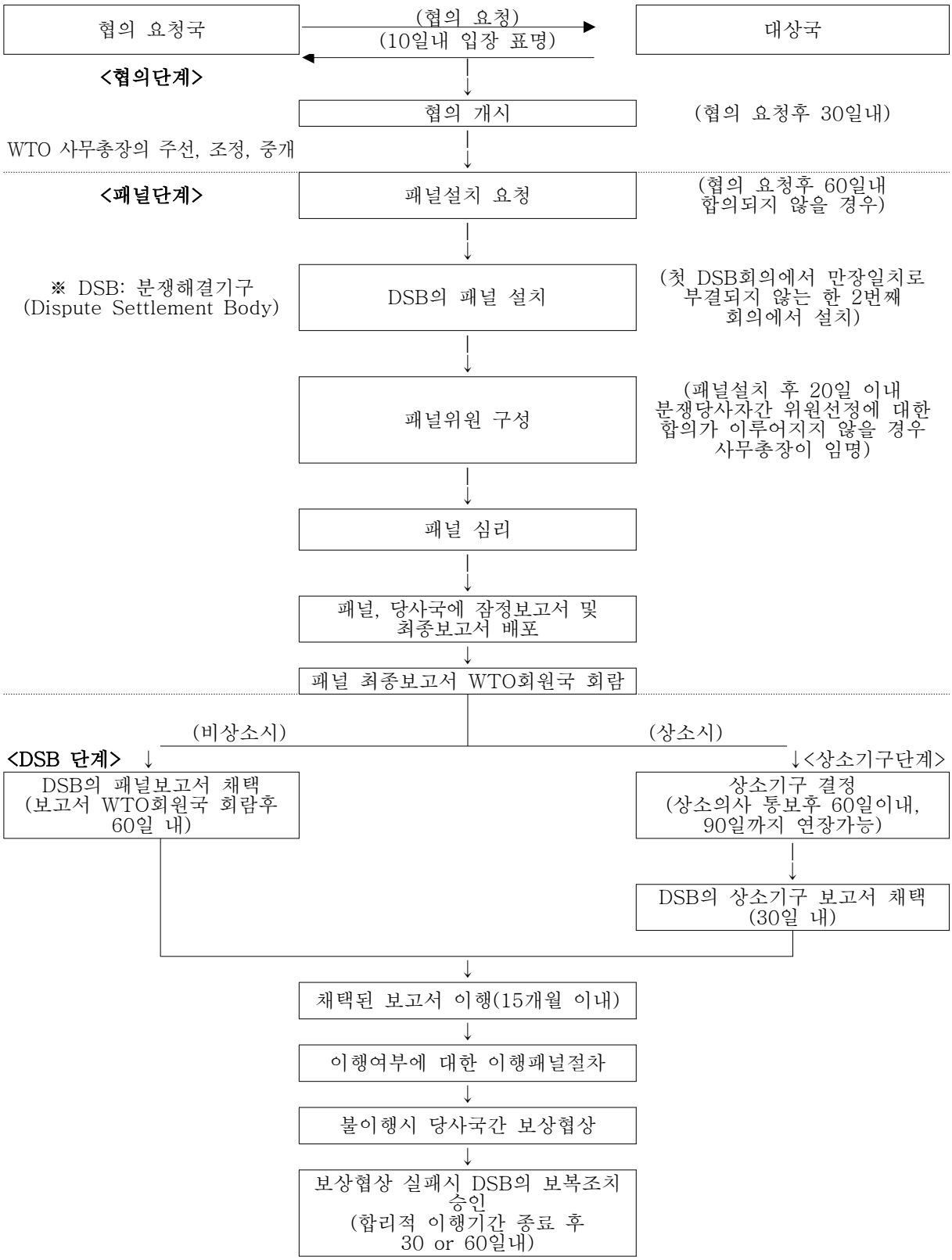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5,385	5,769	5,449	△320	△5.5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7-401

* 담 당 자 : FTA정책관(최동규), FTA정책기획과장(최진원, 044-203-5740), 주무관(손의옥, 044-203-574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 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2. 사업목적

□ FTA 추진정책 수립, 협상, 이행을 통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보와 안정적 교역·투자 확대

○ 산업 통상형 FTA 추진을 통해 업계 실질이익 제고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 외국인 투자의 유치 확대를 통해 경제 선순환에 기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FTA협상(체결) (2,174백만원)

○ 폭증하는 FTA 및 지역경제통합 협상 대응 관련 비용 추가 소요

○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ASEAN 추가자유화 등 양자 FTA 및 RCEP, 한중일 FTA, TPP 등 지역경제통합 협상 본격화

* 협상보조 인건비 (144백만원), 운영비(자료발간, 회의장 임차, 법률자문비 등) (1,150백만원), 여비(629백만원), 업무추진비(71백만원), 연구용역비(180백만원)

② FTA 이행 및 후속조치 (800백만원)

○ 현재 48개국과 11건의 FTA 타결

· 2013.5.1. 한터키 FTA 발효, 2013.8. 한-콜롬비아 FTA 국회비준동의안 제출

○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관련 예산을 통상정책국으로 이관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홍보)

* 운영비(자료발간, 회의장 임차, 법률자문비 등)(408백만원), 여비(258백만원), 업무추진비(64백만원), 연구용역비(70백만원)

③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1,124백만원)

○ 의회 자문예산 8억 감액 등 13년 대비 41% 감액

*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회사 2개 (403백만원, $360,000, 1.5만불/월*2개사)
* 이행 관련 분쟁해결 및 법률자문을 위한 법률회사 (375백만원, $335,000)
* 한미 FTA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346백만원, $310,000, 2.5만불/월+소요경비)

④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백만원)

○ 현행 3단계 번역검독 시스템에 따라 번역·검독 기능 수행

1단계		2단계		3단계
• 한글 초벌 작성 • 양허표 번역의뢰 등 외부기관의 조력을 거쳐 협상담당과 작성	⇨	• 1차 한글본 작성 • 협상단, 관계부처 실무 의견을 참조하여 통상법무과 작성	⇨	• 2차 한글본 작성 • 외부기관(법률회사나 관세법인 등)자문 등을 통해 통상법무과가 작성 및 법제처 심사

* 번역전담 인건비(에디터)(126백만원), 번역검독 외부자문(320백만원), 번역관련 시스템 유지보수(10백만원), 여비(60백만원), 업무추진비(15백만원)

⑤ FTA 이행분쟁 패널대응 (170백만원)

○ FTA 분쟁 발생시 재판부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소요

· FTA 분쟁해결 챕터는 양당사국 비용 분담을 명시 (예: 한미 FTA 제 22장 제2절 제 22.5조 분쟁해결절차의 운영 등)

○ 분쟁 발생은 예측 불가능하므로 최소 1건의 예산 편성 불가피

* FTA 분쟁 1건 가정, 건당 수당 $15만 x 1건

⑥ 동아시아(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650백만원)

- 동아시아(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예산(법률자문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소요

· 동아시아 FTA 및 TPP, RCEP 등 지역 통합 추진을 위해 해당국가 법률 및 국제통상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영미계 로펌 등과의 법률자문 계약 필요

* 법률대응체제구축(528백만원), 중국·일본·ASEAN·아태지역 세미나, 간담회 등 여비(50백만원), 업무추진비(72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동 사업은 국가 통상정책 및 경제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공공성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민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며, 정부 예산 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

o 국제통상질서 재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상교섭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도모

-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5,385**	**5,769**	**5,449**	**△320**	**△5.5**
▪ FTA협상(체결)	1,643	1,725	2,174	449	26.0
▪ FTA이행 및 후속조치	882	900	800	△100	△11.1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2,123	1,893	1,124	△769	△40.6
▪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617	531	531	-	-
▪ FTA이행분쟁 패널대응	120	170	170	-	-
▪ 동아시아(아태지역)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	550	650	100	18.2
□ **비목**(합계)	**5,385**	**5,769**	**5,449**	**△320**	**△5.5**
○ 일용임금(110-03)	201	280	270	△10	△3.6
○ 일반수용비(210-01)	3,179	3,432	3,270	△162	△4.7
○ 임차료(210-07)	348	473	440	△33	△7.0
○ 국내여비(220-01)	1	7	30	23	328.6
○ 국외업무여비(220-02)	1,228	1,042	967	△75	△7.2
○ 사업추진비(240-01)	195	250	222	△28	△11.2
○ 연구개발비(260-00)	233	285	250	△35	△12.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분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참여,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관심 표명 등 다자간 지역 경제통합 논의 대응
- 인니,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를 지속 추진 및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여건 조성

o FTA 기체결국과의 FTA 활용 효과 극대화
- 한미 FTA 인준과정에서 구축한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하여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기업들의 한미 FTA 활용을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57.69	①FTA 협상(체결) 17.25, FTA 이행 및 후속조치 9.00,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구축 18.93,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 FTA 이행분쟁 패널대응 1.70, 동아시아(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5.50
'14	54.49	①FTA 협상(체결) 21.74, FTA 이행 및 후속조치 8.00,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구축 11.24, 통상협정 번역 및 검독 5.31, FTA 이행분쟁 패널대응 1.70, 동아시아(아태지역) 경제통합논의 대응체제구축 6.50
'15	36.92	⑤449('14년 사업비) × 67.8% ,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예산 반영
'16	36.92	④상동
'17	36.92	④상동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절차법(2012.7.18 발효)
-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제4조 및 제17조

○ 추진경위

- FTA 추진 정책 시행

·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키로 결정
· 2003년 9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FTA 체결 사업 본격 추진
· 2004년 3월 FTA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 제정
·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 보완
· 2013년 6월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기조로 한 ‘신통상로드맵’ 발표

- FTA 추진 조직 확대

· 2004년 10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키로 결정
· 2008년 3월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내 자유무역협정정책국과 자유무역협정교섭국으로 FTA 추진 조직을 개편

- 통상기능 일원화에 따라 FTA 추진 조직 이관

·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로 조직 및 예산 이체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세부사업명	44	50	55	57	5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이·전용	불용	이월
2012년	-56백만원	149백만원	40백만원
	외교부 본부 기관운영 기본경비 연금지급금으로 이용(무기계약직 보수 부족분 충당)	예산 집행 잔액	연구개발비 이월 - 계약기간(12.9-13.1)
2011년	30백만원	298.5백만원	111.6백만원
	- 협정문 검독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전용(30백만원)	예산 집행 잔액	- 운영비 이월(66.6백만원) • 법률자문비 이월: 54백만원 - 연구개발비 이월(45백만원)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
2010년	-408백만원	22백만원	55백만원
	재외공관 임차료 부족분 충당	예산 집행 잔액	- 연구개발비 이월(55백만원) • 계약기간 연장 및 미도래로 인한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44** ( )	- ( )	△4 ( )	40 ( )	**39** ( )	0.6 ( )	0.2 ( )
'11년	**50** ( )	0.6 ( )	0.3 ( )	51 ( )	**47** ( )	1 ( )	3 ( )
'12년	**55** ( )	1.1 ( )	△0.5 ( )	56 ( )	**54** ( )	0.4 ( )	1.5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대책
(‘11년 국회 외통위 2012년 예산검토 보고서) • “한미FT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사업” 중 홍보 관련 예산 감액 조정 의견 – 한·미 FTA 미국 비준 완료를 들어 감액 주장	(기반영) • 12년도 홍보 관련 예산 3억 전액 삭감 – 이에 따라 동 사업예산 규모 감액 (24억→21억)
(‘12년 국회 외통위 2011년도 결산 검토 보고서) • 한미,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전용과다를 지적 – 이에 따른 여타 FTA 추진 지연 문제 언급	(기반영) • 번역검독 시스템 정비·개선 예산을 2012년 예산에 반영 – 협정문 검독을 위해 예기치 않은 검독·자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 전용이 불가피했음을 설명
(‘13년 국회 산업위 2012년도 결산 검토 보고서) • 내역사업 예산간 편성 당시 계획과 상이하게 집행된 부분 있음을 지적	(향후 반영) • 사업 특성상 협상 상대국 입장, 협상 진행상황(협상 중단·재개 등), 분쟁발생여부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 당시 계획과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을 설명 – 향후 지적사항 반영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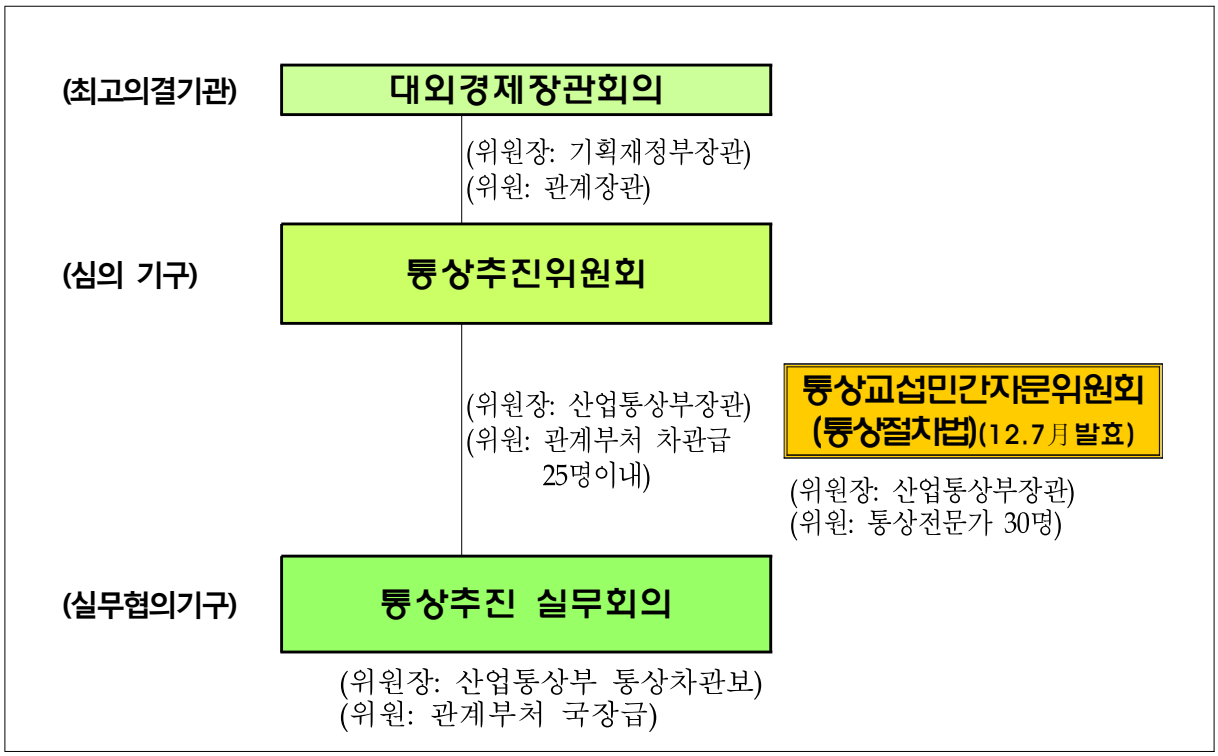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붙임 1. 우리나라 FTA추진현황(14.1)
- 붙임 2. 기발효 FTA 이행위원회 리스트
- 붙임 3.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문회사 지속 활용 필요성

붙임 1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14.1.7)

구 분	대상국가	진행상황	비 고	의의
既발효 (9건, 46개국)	칠레	발효('04.4.1)	'02.10 협상타결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발효('06.3.2)	'04.11 협상타결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발효('06.9.1)	'05.7 협상타결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발효('07.6.1)	'07.6 상품 / '09.5 서비스/ '09.9 투자/'10.11 전체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11년 기준)
	인도	발효('10.1.1)	'09.8 서명	BRICs국가 거대시장
	EU	발효('11.7.1)	'10.10 서명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발효('11.8.1)	'11.3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발효('12.3.15)	'07.6 협정서명 '10.12 추가협상타결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발효 ('13.5.1)	'12.8 기본·상품협정 서명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중)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타결(2건,2국)	콜롬비아	서명('13.2.21)	'12.6 협상타결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호주	타결('13.12.4)	가서명 추진('14 상반기)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 진행 (7건, 16개국)	중국	8차협상('13.11)	제9차 협상 개최 예정 ('14.1월, 중국)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1년 기준)
	인도네시아	6차협상('13.11)	제7차 협상 개최 예정 ('14.2월, 미정)	ASEAN 회원국중 우리 최대 교역국('11년 기준)
	베트남	3차협상('13.10)	제4차 협상 개최 예정 ('14.2월, 미정)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한중일 (3자)	3차 협상('13.11)	제4차 협상 개최 예정 ('14.2, 동경)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3]	2차 협상('13.9)	제3차 협상 개최 예정 ('14.1,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캐나다	14차협상('13.12)	제15차 협상 일정 미정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4차협상('10.5)	제5차 협상 개최 예정 ('14.2월,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멕시코	2차협상('08.6)	제3차 협상 일정 미정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4]	3차협상('09.7)	제4차 협상 일정 미정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11년 기준)
	일본	3차 과장급협의 ('12.6)	제4차 과장급 협의 일정 미정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11년 기준)
협상준비 공동연구 (5건, 13개국)	Mercosur[5]	공동연구완료 ('06.10)	향후 일정 미정	BRICs 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공동연구 완료 ('09.8~'10.8)	향후 일정 미정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5개국[6]	공동연구 종료 ('11.4)	'12.10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개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타당성연구 완료 ('12.12)	'12.4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자원부국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태국	공동연구 개시 ('13.11)	제1차 공동연구회의 개최 ('13.11월, 태국)	

1) EFTA(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4)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UAE·쿠웨이트·오만·카타르·바레인
5) MERCOSUR(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6) 중미5개국 :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과테말라·도미니카공화국

붙임 2 기발효 FTA 이행 위원회 리스트 (총 77개)

구분	위원회/작업반	비고
한·미 FTA 20개	공동위원회	총괄
	고위급 회의	
	상품무역 위원회	
	농업무역 위원회	
	수산 위원회	
	TBT 위원회	
	섬유 위원회	
	SPS 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서비스투자 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보험 작업반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무역구제 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정부조달 작업반	
	노무 협의회	
	환경 협의회	
	중소기업 작업반	
한·EU FTA 16개	무역위원회	총괄
	상품무역 위원회	
	SPS 위원회	
	관세 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서비스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위원회	
	상호인정 협정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화학물질 작업반	
	정부조달 작업반	
	지리적 표시 작업반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문화협력 위원회	
	IP dialogue	
한·아세안 FTA 4개	이행위원회	총괄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경제협력 작업반	
	서비스 작업반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	총괄

구분	위원회/작업반	비고
5개	임시 관세위원회	
	임시 전문직서비스위원회	
	전문직 기술사 상호인정 작업반	
	TBT 위원회	
한·인도 CEPA 6개	장관급 공동위원회	총괄
	국장급 공동위원회	
	관세위원회	
	SPS 공동작업반	
	TBT 공동작업반	
	CEPA 개선(Upgrade) 작업반	
한·칠레 FTA 7개	자유무역위원회	총괄
	상품무역 위원회	
	SPS 위원회	
	투자 및 국경간 서비스무역 위원회	
	표준 관련 조치 위원회	
	일시입국 실무 작업반	
	정부조달 실무 작업반	
한·EFTA FTA 3개	공동위원회	총괄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한·페루 FTA 12개	공동위원회	총괄
	상품무역 위원회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	
	SPS 위원회	
	TBT 위원회	
	금융서비스 위원회	
	조달 위원회	
	협력 위원회	
	노동 협의회	
	환경 협의회	
	농수산물 무역 임시 작업반	
	기업인의 일시입국 작업반	
한·터키 FTA 4개	공동위원회	총괄
	상품무역위원회	
	관세위원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붙임 3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문회사 지속 활용 필요성**

1 사업 목적

□ 미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와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법적 분쟁·의회내 논란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이행 및 분쟁해결 관련 법률 자문 및 한·미 FTA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업계 네트워크 구축

□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현안(ISD, 자동차/부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법률자문을 통한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내 한미 FTA 문제 제기 사례

- 미 의회 양원 합동 경제위원회(JEC) 보고서 및 Kirk USTR앞 공개서한 등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폭 확대에 대한 미 의회내 우려 제기
- 미 의회 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논의 움직임(법안 제출 등)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최 관련 미 의회의 부정적 입장
- FTA 특혜품목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강화 움직임
- 국내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법안 도입에 대한 미 정부/의회의 문제 제기

□ 2013.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성공적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 현지 자문회사 활용을 통해 동 협정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한-미 FTA 이행 추진

※ 자문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회전문, 법률전문 및 경제통상네트워크 자문회사를 구별하여 활용 필요

2 자문회사 지속 활용 필요성

1 의회 자문회사 유지 필요성

○ 미 의회내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자동차/부품 규제 등 경제·통상 관련 민감한 현안이 남아 있어 개별의원 설득 작업 등 미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

- 미 의회내 한미 FTA 견제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도 협정 발효 이후에 자문회사를 계속 활용 중

- 싱가포르(2004년 발효) : 자문회사 6개사 고용(연간 평균 약 $100만)
- 모로코(2006년 발효) : 자문회사 5개사 고용(현재 1개사 연간 평균 $125만 고용중)
- 바레인(2006년 발효) : 자문회사 4개 고용(연간 평균 약 $100만)
- 도미니칸 공화국(2009년 발효) : 자문회사 1개사 고용(연간 평균 약 $110만)

※ 공화·민주 양당간 대립 및 상·하원간 비협조 등 미국의 정치역학관계로 인해 최소 2개 이상의 의회 자문회사 고용 필요

2 법률자문회사 유지 필요성

○ 자동차, 지재권 이슈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들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법률 자문을 위해 자문회사 활용 필요

- 이행 및 분쟁해결 법률자문회사 활용 필요

3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 자문회사 유지 필요성

○ 미국의 기업 및 수입업자, 우리 수출업자의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지역 업계 DB 및 네트워크 지속 활용

○ 중소기업 미국 시장 진출 확대 추진

-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내 유통기반을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회사를 통한 매칭 작업 등 필요

※ 대한상의 FTA 활용애로 설문조사('13.3월)에 따르면, 해외진출 노하우 부족(32.0%)으로 한미 FTA로 확대된 미국시장진출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기 구축된 한미 FTA 활용강화를 위한 웹사이트 지속 확대·관리 필요

- 미 전역내 한국과 수출입·투자 관계가 있는 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미국 주에 대한 경제통상 정보, 한미 FTA 활용 정보 등 한미 FTA 활용 강화를 위한 웹사이트(U.S. Korea Connect) 기 구축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353**	**2,359**	**2,419**	**60**	**12.3**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569	940	836	△104	△11.1
○ 국제기구분담금	784	723	737	14	1.9
○ 다자 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	696	847	150	21.5
【 합 계 】	**1,353**	**2,359**	**2,419**	**60**	**12.3**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569	940	836	△104	△11.1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3 - 1900 - 1932 - 301
* 담 당 자 : 통상정책국장(황규연), 통상정책총괄과장(안성일, 044-203-5620), 사무관(전동욱, 044-203-5622)/주무관(이도영, 044-203-562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의 추진방향과 시행전략 수립 및 강화

○ 산업과 통상의 연계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통상정책의 추진

○ 산업계, 전문가, 국회 등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제도화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 109백만원

- 통상현안에 대한 부처간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른 통상추진위원회* 운영 (11백만원)

* 종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대통령훈령)의 FTA 추진 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23개 부처로 구성(위원장 : 산업부장관)

** 통상추진위원회(실무회의 개최) : 11백만원(1백만원*11회)

- 통상정책 및 교섭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 업종별 영향분석 등 민관 협업을 위한 「통상산업포럼」* 운영 (98백만원)

*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공동위원장 : 산업부장관, 무역협회장)

** 통상산업포럼 개최 : 98백만원(포럼 개최(연2회*5백만원) / 업종별 분과회의 개최(22개 분과 * 연4회 * 1백만원))

○ 통상절차법의 이행 : 287백만원

- 통상절차법 제9조, 11조, 15조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및 이행상황 평가 (254백만원)

*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행상황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 220백만원

* 타당성조사 및 이행평가 등을 위한 현지 실사 : 34백만원
(주요국 4회 * 평균 4백만 * 2인=32백만원) + (국내 여비 2백만원)

- 공청회, 설명회 등 개최 (8백만원)

* 한-중 FTA, 한-인니 CEPA 등 관련 국내외 의견수렴 및 설명 : 2백만원*4회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백만원)

* 위원 자문료(30만*30명)+회의개최(1백만원)*2회 : 20백만원

- 통상절차법 해석 및 개정 관련 법률 자문 (5백만원)

○ 통상전략 수립 : 150백만원

-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 양자간 통상현안 대응전략 및 다자통상 협상 대응 전략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 : 50백만원

-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등 통상 제도 및 통상 환경 조사 연구(20백만원)

- 주요국 통상제도 및 환경 조사연구를 위한 국내외 여비(30백만원)

○ 통상정책 홍보 : 40백만원

- 통상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통상환경 책자발간, 언론 간담회 개최(25백만원)

- 통상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15백만원)

○ 해외 비관세 장벽 사례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 200백만원

- 주요 통상 상대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민감하고 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 비관세 장벽 사례를 선별하고, 양자·다자 등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40백만원*주요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 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 홍보	940백만원	836백만원
▪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 협상 대응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세미나 개최	- 통상추진위원회, 통상산업포럼 등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체 운영
▪ 통상절차법 이행		-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 6회
▪ 통상전략 수립	- 다자, 양자간 협상 전략 수립 관련 연구용역 7회	-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 양자 및 다자간 통상전략 수립 등 5회
▪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		- 주요국 비관세장벽 등 통상 제도 및 환경 조사
▪ 대국민 통상정책 홍보		- 통상정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등
▪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 주요국 비관세장벽 사례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5회

□ 지원 필요성

○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통상정책 수립 및 추진 상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 강화 필요

-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통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통상정책 및 협상 추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노력

- 농수산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피해 보완 대책 사전 마련 등 국내 대책 내실화

○ **(통상절차법의 이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의무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조약 체결 절차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협상 추진

○ **(통상전략 수립)** 지속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마련, WTO 협상 등 다자간 협상 및 양국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통해 국익 극대화

○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 최근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진출 장벽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전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통상환경 개선에 활용

○ **(대국민 통상정책 홍보)** 통상정책 및 통상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통상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A)	'14예산(B)	증 감 (B-A)	%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569**	**940**	**836**	**△104**	**△11.1**
▪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 (산출근거)	**80**	**364**	**109** (통상추진위원회 및 실무회의 11회*1백만원=11백만원) (통상산업포럼 2회*5백만+22개분과*4회*1백만=98백만원)	**△255**	△70
▪ 통상절차법의 이행 (산출근거)	-	-	**287** (경제적타당성검토, 영향평가 및 이행상황평가 연구개발 6건 220백만원, 현지실사 국외여비 34백만원) (공청회, 설명회 개최 4회*2= 8백만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2회*10=20백만원) (법령해석 및 자문 5백만원)	**287**	-
▪ 통상전략 수립 (산출근거)	**489**	**576**	**150** (중장기 통상정책 수립, 양자/다자 통상협상 대응전략 연구용역 5회*30=150백만원)	**△426**	△74
▪ 주요국 통상환경 연구 (산출근거)	-	-	**50** (약 80여개 교역투자대상국 통상제도 조사연구용역 1건*20=20백만원) (주요국 통상제도 및 조사연구 국내외 여비=30백만원)	**50**	-
▪ 대국민 통상정책 홍보 (산출근거)	-	-	**40** (통상정책홍보물 제작, 언론간담회등=25백만원) (통상정보 원스톱 서비스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5백만원)	**40**	-
▪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수립 (산출근거)	-	-	**200**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40백만원 * 주요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아세안 등) = 200백만원)	**200**	-
□ **비목(합계)**	**569**	**940**	**836**	**△104**	**△11.1**
○일반수용비(210-01)	80	360	167	△193	△53.6
○국내여비(220-01)	4	4	5	1	25
○국외업무여비(220-02)	245	176	59	△117	△66.5
○연구개발비(260-00)	240	400	605	200	5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통상정책 수립 및 조약 체결 관련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통상 추진 지원

○ 통상절차법 상 제반 의무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통상조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

○ 주요 협상 등 통상현안과 통상 환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 하는 통상 전략 수립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 액	산출근거
'13	9.4	□WTO/FTA대응 운영비 : 3.6 / □WTO/FTA협상 여비 : 1.8 □협상전략수립 연구개발비 : 4
'14	8.36	□통상협의체 운영 1.09 / □통상절차법 이행 2.87 □통상전략수립 1.5 / □주요국 통상환경연구 0.5 / □통상정책 홍보 0.4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2
'15	8.36	□통상협의체 운영 1.09 / □통상절차법 이행 2.87 □통상전략수립 1.5 / □주요국 통상환경연구 0.5 / □통상정책 홍보 0.4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2
'16	8.36	□통상협의체 운영 1.09 / □통상절차법 이행 2.87 □통상전략수립 1.5 / □주요국 통상환경연구 0.5 / □통상정책 홍보 0.4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2
'17	8.36	□통상협의체 운영 1.09 / □통상절차법 이행 2.87 □통상전략수립 1.5 / □주요국 통상환경연구 0.5 / □통상정책 홍보 0.4 □해외비관세장벽 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수립 2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대통령훈령)」

○ 추진경위

- '13년까지 FTA 산업대응체제 구축 및 다자간 협상전략수립 이행에 중점

[FTA 산업대응체제구축]

-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FTA 체결확대를 통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 FTA 추진국 산업별 영향분석, 관세 양허안, 원산지 기준, 투자 유보안 등 최적 협상안 도출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 수행지원

[다자간 협상전략수립]

-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 각료선언·정식 출범 이후 DDA 협상전략수립 및 협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 DDA 협상 국외여비, 협상전략수립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 '14년부터는 구 지경부 '통상협상전략수립'과 외교부 이관 '통상외교연구' 및 '다자통상외교추진 및 정책홍보' 사업 간 구조조정을 통해 '통상정책 수립 및 정책홍보'와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사업으로 변경

- 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 관계부처 및 기관 협업, 대국민 홍보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통상정책수립 및 정책홍보	6.6	7.6	5.5	9.4	8.3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이월 : 연구개발비 215백만원

  * 국가간 교역의 불안정적 추이, FTA 협상 전략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연구용역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집행시기 이월

- 불용 : 12백만원

  * 협상일정 취소·지연 등으로 국내외 출장 여비 불용

○ 2011년

- 이월 : 연구개발비 50백만원

  * 협상 전략 수립이라는 특성상 하반기에 대두된 이슈에 대한 충분한 연구기간 부여를 위해 집행시기 이월

    ① WTO ITA 확대협상 대응방안 : '11년 APEC 정상회의 결과 ITA 품목 확대 논의가 급진되어 신속한 전략 마련 필요

    ② APEC에서 민간 교류 기능 강화 : 최근 WTO 협상 교착에 따라 APEC 중요성 증가로 이에 대한 우리 민간측 참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불용 : 26백만원국외여비 19백만원 및 연구용역개발비 7백만원

  * 상대국 요청에 의한 FTA 협상 연기로 인한 국외여비 19백만원 불용, 연구용역 완료 후 실비 정산 결과 당초 계약 금액에서 미사용 금액 7백만원 발생

○ 2012년

- 이월 : 연구개발비 30백만원

  * 인니, 베트남과의 통계자료 교환이 늦어짐에 따른 양허분석 지연 및 용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행시기 이월

- 불용 : 국내여비 1백만원

* 집행과정에서 국내여비 1백만원 잔액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6.6 ( )	0.66 ( )	△0.1 ( )	7.16 ( )	4.88 ( )	2.15 ( )	0.12 ( )
'11년	7.6 ( )	2.15 ( )	- ( )	9.75 ( )	8.99 ( )	0.5 ( )	0.26 ( )
'12년	5.5 ( )	0.5 ( )	- ( )	6 ( )	5.69 ( )	0.3 ( )	0.01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부처 직접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국제기구분담금(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	784	723	737	14	1.94

* 사업코드 : 21 - 11 - 00 - 110 - 113 - 1900 - 1932 - 302

* 담 당 자 : 통상정책국장(황규연), 통상정책총괄과장(안성일, 044-203-5620), 주무관(김동효, 044-203-5629)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국제기구 회원국 지위 유지를 통한 관련 산업 보호

○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보수집 및 업계의 입장 반영 등 국내 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기구 가입 협약에 근거하여 매년 회원국에 할당되는 분담금

- 미터협약 및 국제 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515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예상 분담금 345,492유로×기준환율 1,490원/유로
- 345,492유로 = 327,404유로(분담금 총액 11,693,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 비율 2.8%) + 6,020유로(이란, 북한 등 면제국 할당) + 12,068유로(’09년 이후 추가 운영비용 431,000유로에 대한 할당)

○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83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예상 분담금 56,000유로×기준환율 1,490원/유로
- 56,000유로 = ‘14년 회원국 할당 기준금액 14,000유로 x 조정계수 4 (한국은 WB기준 인구수 48백만으로서 class3에 속함)

○ OECD조선작업반 분담금 : 139백만원

- 산출내역 : ‘14년 분담금 92,656유로 × 기준환율 1,490원/유로
- 92,656유로 = OECD 조선작업반(party 6) 프로그램 총액 370,623유로 x 한국 분담비율 25%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국제기구분담금		
▪ 국제도량형국	490 · 기구 분담금 필요 총액 11,185,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 비율 2.76% =308,706유로 · 카메룬, 이란, 북한 등 면제국 비용 할당분 =6,020유로 · 추가 운영비용 431,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비율 2.76% = 11,895유로	515 · 기구 분담금 필요 총액 11,639,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 비율 2.8% = 327,404유로 · 카메룬, 이란, 북한 등 면제국 비용 할당분 = 6,020유로 · 추가 운영비용 431,000유로에 대한 한국 분담비율 2.8% = 12,068유로
▪ 국제법정계량기구	87 · 국가별 할당 기준금액 14,500유로 x 조정계수4(인구수 48.6백만) =58,000유로	83 · 국가별 할당 기준금액 14,000유로 x 조정계수4(인구수 48.6백만) =56,000유로
▪ OECD조선작업반	146 · OECD 전체분담금 중 조선작업반(party6) 프로그램 총액 389,000유로 x 한국 분담비율 25% = 97,250유로	139 · OECD 전체분담금 중 조선작업반(party6) 프로그램 총액 370,623유로 x 한국 분담비율 25% = 92,656유로

□ 지원 필요성

○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당기구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분담금의 지속적 납부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기구분담금	**784**	**723**	**737**	**14**	**1.9**
▪ 국제도량형국 (산출근거)	485	**490**	**515** · 기구 분담금 예상 총액 345,492유로 · 기준환율 1,490원/유로	**25**	**5.1**
▪ 국제법정계량기구 (산출근거)	85	**87**	**83** · 국가별 할당 기준금액 14,000 유로 x 조정계수4 (인구수 48.6백만) = 56,000유로 · 기준환율 1,490원/유로	**△4**	**△4.6**
▪ OECD조선작업반 (산출근거)	115	**146**	**139** · 조선작업반(party6)프로그램 총액370,623유로 x 한국 분담비율 25% = 92,656유로 · 기준환율 1,490원/유로	**△7**	**△4.8**
▪ 국제설탕기구 (산출근거)	70	-	-	-	-
▪ 납아연연구그룹 (산출근거)	29	-	-	-	-
□ 비목(합계)	**784**	**723**	**737**	**14**	**1.9**
○국제부담금(340-02)	784	723	737	14	1.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 기구에서 한국의 위상 유지 및 국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7.23	○국제도량형국 4.9, 국제법정계량기구 0.87, OECD조선작업반 1.46
'14	7.37	○국제도량형국 5.15, 국제법정계량기구 0.83, OECD조선작업반 1.39
'15	8.18	○분담비율 증가 및 유로환율상승 등을 반영한 '15년 증가 예상액 0.81
'16	8.18	○'15년이후 특별한 증가요인 없음
'17	8.18	○상동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미터협약 및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 추진경위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0년부터 국제설탕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1년부터 섬유수출개도국기구가 비공식조직으로 전환되어 제외
- '12년부터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이 ODA예산 분리 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13년 예산부터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분담금이 의무/재량 분담금 분리 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13년 예산부터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농림부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국제기구분담금	8.23	8.24	7.84	7.23	7.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0년

- 환율상승으로 인한 부족액 10백만원을 통상협상전략수립 예산에서 전용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의 환율 소폭하락으로 3백만원 불용

○ 2011년 : 이·전용, 이월·불용 없음

○ 2012년 : 이·전용, 이월·불용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75 ( )	- ( )	0.1 ( )	8.85 ( )	8.82 ( )	- ( )	0.03 ( )
'11년	8.75 ( )	- ( )	- ( )	8.75 ( )	8.75 ( )	- ( )	- ( )
'12년	7.84 ( )	- ( )	- ( )	7.84 ( )	7.84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각 국제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없음

다자 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	696	846	150	21.5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2-401

* 담 당 자 : 통상정책관(황규연), 세계무역기구과장(김진동, 044-203-5630), 주무관(신세미, 044-203-563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1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2. 사업목적

□ WTO의 정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무역규범 강화를 추진, 우리의 통상 이익 제고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WTO 체제 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519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134백만원)

*** WTO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 분야별 협상 참가 및 각료회의 운영 직접 경비 7개 분야(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53 (1.5백만원*7개분야*5회)
- WTO 분야별 협상대책반 운영 경비 12 (1백만원*10회+2백만원)
-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대국민 설명을 위한 세미나·포럼 준비 5 (1백만원*2회, 회의장 등 부대시설 임차 3)
- 업무참고용 자료 및 간행물 구입 12 (1백만원*12회)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 회의 결과 책자 및 양허안 분석자료집 12 (6백만원*2회)
- 양허안 작성 및 분석, 합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 40 (15백만원*2회+10백만원)

-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관계부처 간 업무협의(30백만원)

* 회의 대응 협의, 분야별 협상대책반, 주한외교단, 관계부처간 업무협의 28 (50,000*10인*7개분야*8회)
협상 분야별 경과 및 협상타결안 설명을 위한 세미나 2 (50,000*40인*1회)

- 다자간 및 복수국 간 협상 준비 지원요원 채용(12백만원)

- WTO 정례회의 참석 등 다자통상체제 논의 참여(343백만원)

* 정례 각료회의 및 고위급 회의, 주요각료회의 계기 통상장관회담 참석 63 (31.5백만원*2회)
분야별(농업, 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ITA, 규범, SPS/TBT) 협상 참석 280 (8백만원*7개분야*5회)

○ APEC, OECD, G20, 다보스 포럼 등 지역경제협력 강화(212백만원)

- APEC 및 OECD 고위급 회의, 실무급 위원회 등 참석(140백만원)

*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연 3회) 및 고위관리회의(SOM, 연 4회) 참석 40
통상장관회의(MRT, 연 2회) 및 정상회의(연1회) 참석 55
* OECD 무역위원회(연 2회), 각료이사회(무역세션, 연 1회) 참석 45

- G20, 다보스 포럼 참석(62백만원(31백만원*2회))

- 전문가 회의, 회의준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대책회의 및 업무협의 등 (10백만원)

○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체계 구축(115백만원)

- RTAs 모니터링, 정보분석센터 운영, 세미나·공청회 개최(110백만원)

· 세계 권역별 RTAs 모니터링 센터 운영 65 (유럽, 미주 권역 대상)
· 한국내 RTAs 정보분석센터 운영 35 (RTAs D/B 구축 운영 15 + 분야별 RTAs 분석내용 종합 및 다자적 수렴 요소 추출 20)
· RTA 회의 개최 및 운영 10 (운영경비, 자료구입비, 인쇄비 등)

- 주요국 동향 파악 및 사전 실무 협의,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접촉 협의(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WTO 정례기구 회의 및 DDA 협상은 WTO 다자통상 분야의 기본적·필수적 활동인 바, 적극 참여를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 및 보호주의 대응 등을 통한 우리의 통상국익 확보 필요

- WTO/DDA, FTA 등 대외 통상지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선진통상 국가 기반을 마련

○ G20, APEC, OECD, 다보스포럼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

- APEC 및 OECD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통상관련 주요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

- APEC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ODA와 연계한 해외 프로젝트 시장진출 기반 확대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696백만원)	**-**	**696**	**846**	**150**	**21.5**
▪ WTO체제강화와 다자간 협상 진전 추진 사업	-	74	519	445	601
▪ APEC, OECD, G20 등 지역경제 협력 강화	-	-	212	212	순증
▪ 중장기통상전략 수립 및 홍보사업	-	22	-	△22	순감
▪ 통상절차법의 이행	-	300	-	△300	순감
▪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축	-	300	115	△185	△61.7

□ **비목**(696백만원)	-	**696**	**846**	**150**	**21.5**
○ 일용임금(110-03)	-	22.2	12	△10.2	△46.0
○ 일반수용비(210-01)	-	87.9	127	39.1	44.5
○ 특근매식비(210-05)	-	3.5	7.5	4	114.3
○ 임차료(210-07)	-	0.3	9.5	9.2	3067
○ 위탁사업비(210-15)	-	250	100	△150	△60
○ 국내업무여비(220-01)	-	8	-	△8	순감
○ 국외업무여비(220-02)	-	86.0	545	459	534
○ 사업추진비(240-01)	-	49.2	45	△4.2	△8.5
○ 연구개발비(260-00)	-	188.5	-	△188.5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다자무역체제의 대표적 수혜국으로서 WTO 분야별 협상 진전, 지역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보편적인 통상규범 강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통상이익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6.9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74백만원 통상정책수립·정책홍보 : 322백만원 RTA모니터링/분석 : 300백만원
'14	8.4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519백만원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212백만원 RTA모니터링/분석 : 115백만원
'15	6.9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72백만원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109백만원 RTA모니터링/분석 : 115백만원
'16	6.9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72백만원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109백만원 RTA모니터링/분석 : 115백만원
'17	6.96	WTO 등 다자협상 추진 : 472백만원 APEC 등 지역경제협력 : 109백만원 RTA모니터링/분석 : 115백만원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정부조직법 제37조에 따라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조정
-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추진경위

- WTO DDA :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출범, 2002년부터 각 분야별 협상 개시
- 2008년 잠정타협안 타결 실패 이후, Early Harvest, 복수국 간 협상 등 다른 접근방법 모색 중으로 '13년 제9차 각료회의 발리 패키지 타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다자 통상협상 추진 및 글로벌 경제협력강화	-	-	-	6.96	8.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구 외교통상부 이체('13년)예산)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통상협력국

통상협력국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3,300	13,174	13,711	537	4.1
○ 양자산업협력	8,205	7,405	6,965	△440	△5.9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048	5,600	6,600	1,000	17.8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47	47	46	△1	△2.1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122	100	△22	△18
【 합 계 】	13,300	13,174	13,711	537	4.1

양자산업협력(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양자산업협력	8,205	7,405	6,965	△440	△5.9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1

* 담 당 자 : 통상협력국장(도경환), 통상협력총괄과장(윤상흠, 044-203-5680), 사무관(전수하, 044-203-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3～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무역협회 등 국제협력사업 기관

2. 사업목적

□ 대통령 및 장·차관 등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산업자원협력을 증진

○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을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인 신흥개도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 정부간 협력채널 : 70개(산업분야 33, 자원분야 37, '13.9월 기준)

○ 美, 日,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정책 공유 및 통상협력 강화로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시 애로를 겪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국가간(국제개발금융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자원 협력 기반 조성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전략국가별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전략 수립지원(973백만원)

- 말레이시아 산업기술 협력 로드맵 수립 및 아세안 주요 유망 산업 연계진출 방안 연구 등 아세안 지역 협력전략(143백만원)
- 한-중 통상환경변화에 대비한 對中 진출전략 수립 및 일본 경제, 산업, 정치 분야 등의 조사연구 등을 통한 전략수립(600백만원)

* 중국경제 연구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일본의 경제통상, 산업자원, 비즈니스, 사회문화 등 주요 산업통상 이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제언, 분야별 일본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통상포럼 개최

- 신흥국의 산업·에너지분야 개발지원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흥국공동발전 프로그램 운영(63백만원)
- 중남미 주요국가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및 기업진출 관련 법령·제도 조사 등 (167백만원)

· 산업·자원분야 주요 정보 제공, 관련법령 및 제도 DB 구축·운영, 유관기관 및 기업 대상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1,514백만원)

- 아주지역 정부간 협력채널(15개) 운영지원(289백만원)

* 한-인니 경협위원회 및 에너지 포럼, 한-베트남 공동위원회, 한-말련 산업협력WG

- 한-중 통상장관회의, 중국 지방정부간 협력채널 구축 및 한-일 경제인 및 지역간 협력채널 운영(665백만원)

* 한-광동성 경제무역 발전포럼, 한-섬서성 협력 공동연구 및 협의체 운영, 한-섬서성 경제협력 강화사업, 한일경제인회의, 지역경제교류회의 등

- 한-카자흐·우즈벡·투르크·아제르지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4개)을 통한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110백만원)

* 한-카자흐 자원협력위('04부터 7회 개최), 한-우즈백 산업자원위('06년부터 3회 개최), 한-투르크 공동위('08부터 3회 개최), 한-아제르 협력위('13년부터 1회 개최)

- 한-러 산업협력위 등 EU 및 러시아 지역 경제협력채널(5개) 운영(70백만원)

*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프랑스 등 산업협력위(4건) 및 러시아 자원협력위

- 중남미 국가와 산업·자원분야 협력위 개최(12개) 지원(160백만원)

* 미국·브라질·페루 등 산업·경제분야 협력위 (4개) 및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 자원협력위 (8개) 운영지원

- 아프리카 주요 협력국(남아공, 에티오피아, 가나 등)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및 한-알제리 경협TF(130백만원)

- 중동 주요 자원국(사우디, 이라크 등 GCC국가)과의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90백만원)

○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지원(1,875백만원)**

- 주요 동남아 국가 진출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한-서남아 비즈니스 포럼 등 아세안 지역 네트워크 구축(315백만원)

- 한-대만 산업협력 포럼을 통한 중화권 네트워크 구축 및 부품소재 인재육성, R&D인력 교류 등 산업인력역량강화 등 일본 네트워크 구축(830백만원)

- 중앙아 진출 뉴실크로드 협의회, 신흥시장진출협의회 운영*(90백만원)

* 신흥시장 진출 데스크 운영, 신흥시장 진출 포럼 개최 및 시장조사 등

- 아제르바이잔 등 CIS 국가 대상 에너지산업분야의 우리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현지 민관포럼 개최 및 비즈니스 미팅 지원(50백만원)

- 한-EU 통상협력 사절단 파견, EU 협력 네트워크 포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포럼한-러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사업,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한-러 비즈니스 어워드 등 EU 및 러시아지역 네트워크 확대(210백만원)

- 아프리카 주요 국가 발주처 인사 초청, 플랜트-건설-인프라 등 현지 유관기관 협력 등 아프리카 지역 네트워크 구축및 중동・아프리카 주요국과의 비즈니스위크 개최(380백만원)

○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합동 경제협력 지원(2,353백만원)**

- 한-인니 수교 40주년 기념 양국 경협행사, 아세안 지역국 경협 및 산업자원협력단 파견, 아세안 한국진출기업 지원사업 등 아세안 지역 경제협력(683백만원)

-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중국진출 유망 업종별 비즈니스 교류 추진 및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폐쇄적인 일본시장 극복 및 진출 지원(1,370백만원)

  *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한중 무역투자정보망 운영 및 관리, 중국 중서부지역 투자환경 조사단 파견 등

- 한-카자흐·우즈벡·투르크 민간경협위 비즈니스·투자포럼 등 중앙아 지역 경제협력(80백만원)

- 對중동·아프리카 정보제공, 전문가포럼, 민간 경협위 개최 및 아랍어포탈 구축 등 한-중동·아프리카 민관 경제협력 채널구축사업(180백만원)

- 중남미 중점 협력분야에 대해 중소기업 등의 진출확대 도모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및 행사 개최 (40백만원)

○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사업(250백만원)**

- 해외플랜트 펀드 조성 지원,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금융애로 해소 지원(160백만원)

- 한-노르웨이 녹색성장 협력 사업(30백만원)

- 러시아 경제 현대화 사업*에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대 신흥개도국, 미개척 자원부국 선점을 위한 경제협력 확대 필요

- 정상외교 및 고위급 방문과 연계한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경제협력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및 러시아, 중앙아 등 자원부국과의 산업협력위, 민간 교류행사, 기술교류 등 협력기반 구축 필요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중국 등 지역내 신흥국과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교류사업 추진 지원

○ 주요 교역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경제협력 지원 필요

- 녹색기술 등 선진기술 공동개발 확대, FTA발효 대비 협력강화

○ 통상환경은 단순한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사항과 우리의 필요사항이 연계된 협력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 수립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정책기능 지원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세부사업명**	**8,205**	**7,405**	**6,965**	**△440**	**△5.9**
▪ 전략국가별 맞춤형 산업자원 협력전략 수립지원	732	1,230	973	△257	△20.8
▪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	1,685	1,590	1,514	△76	△4.7
▪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지원	1,339	1,685	1,875	190	11.3
▪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 합동 경제협력 지원	3,919	2,650	2,353	△297	△12.6
▪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530	250	250	-	-
□ **비목**(합계)	**8,205**	**7,405**	**6,965**	**△440**	**△5.9**
○ 민간경상보조(320-01)	8,205	7,405	6,965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흥시장 선점을 위해 개도국과의 통상협력 비중 확대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관련 사업 지원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정부간 협력채널이 중요한 자원부국과의 정부간, 민관합동 협력채널 등 통상인프라 구축에 주력

- 기술지원, 전문가 교류 등 개발협력 성격의 다양한 양자협력사업 확대로 우리기업 동반진출 유도

○ 선진 경제권과는 대외경제협력체 등을 통한 통상현안 해소, 녹색기술 공동연구 등 경제협력 고도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 지원 등

○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산업발전정책 체계화, 맞춤형 산업자원협력 전략수립 지원 등 산업자원협력 기반구축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74.05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2.60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38.95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50
'14	69.65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48.44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18.71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5
'15	58.85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9.00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7.00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5
'16	53.94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6.94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5.00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2.0
'17	45.23	○신흥시장과의 자원확보 등 전략적 협력 : 30 ○선진시장과의 산업협력 및 통상협력 고도화 : 14 ○전략수립, 금융협력 등 산업자원협력기반구축 : 1.23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2.1 : 한일정상회담(서울)에서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사업 합의
- '93.1 : 한일산업협력 사업 시행
- '93.4 : 한미산업기술협력기금 설치 제안(한미통상장관 회담)
- '96.1 : 산업협력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EU 고위협의회)
- '96.11 : 대통령 동남아 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산업기술협력 사업 추진
- '98.1 : 한미・한EU・한아세안 산업기술협력사업 시행
- '01.5 : 국무총리 중동순방 후속사업으로 한중동 산업협력 사업 기획
- '03.1 : 한중동산업협력사업 시행
- '04.1 : 한아세안산업협력사업에서 한중협력사업을 분리
- '06.4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알제리 경제협력 T/F 발족
- '06.5 :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
- '06.10 : "아세안 중소기업 경영인 초청연수 사업"과 "여성 중소기업인 네트워크사업"이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공식사업으로 채택
- '08.5 : 총리 중앙아방문계기 우즈벡, 카자흐, 투르크 등 비즈니스 포럼 개최
- '08.9 : 2008년 한-아프리카 산업협력 포럼 개최
- '08.9 : 러시아 정상방문계기 한러 산업협력 강화
- '08.10 :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작업반 회의 후속조치
- '09.1 :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기업의 대한 진출지원 합의
- '09.5 : 대통령 중앙아 순방계기 우즈벡, 카자흐 등 주요 국가별 비즈니스포럼 개최시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 제의
- '09.6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아세안 협력강화 합의

- ‘10.12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 합의
- ‘11.5 : 제1차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무 T/F 회의 개최
- ‘11.7 : 대통령 아프리카(남아공, DR콩고, 에티오피아) 순방
- ‘11.8 : 대통령 카자흐, 몽골 순방, 제2차 한-미 산업협력위 개최
- ‘11.10 : 제2차 한-인니 경협 실무 T/F회의, 한-몽골 자원협력위
- ‘11.11 : G20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담
- ‘11.12 : 제3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
- ‘12.01 : 한-중 정상회의, 제4차 중남미 경제협력간담회 개최
- ‘12.02 : 대통령 중동, 중부유럽(터키, 헝가리) 순방, 제4차 한-헝가리 산업협력위, 제1차 한-인니 경제협력위
- ‘12.04 : 한-베네수엘라 자원협력위
- ‘12.05 :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얀마 정상회의, 제9차 한-알제리 경협 T/F회의 개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양자산업협력	85	82	82	74	69.6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0~’12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85** ( )	- ( )	- ( )	**85** ( )	**85** **(100%)**	- ( )	- ( )
’11년	**82** ( )	- ( )	- ( )	**82** ( )	**82** **(100%)**	- ( )	- ( )
’12년	**82** ( )	- ( )	- ( )	**82** ( )	**82** **(100%)**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2010년 지적사항 ('09결산 지경위 검토보고서)

o 세부사업 및 대행기관의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를 심사·결정하는 각 협력사업의 조성심의회는 지식경제부 공무원과 주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o '양자산업협력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출상위 20위 이후의 신흥시장 수출비중"이며, 이는 각 국가별 총수출액을 순위별로 산출하여 1-20위 국가를 제외한 20위 이후의 국가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바, 동사업의 8개 양자산업협력은 아시아·아프리카·러시아CIS·중동 이외에도 일본·중국·미주·EU를 포함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의 절반에 대한 성과지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2011년 지적사항

o (2011.1.19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에서 작성한 국회지적사항) 각 세부사업들의 예산집행은 실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주체별로 세부 집행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담당자가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처리 하는 등 문제 있음

o (2011.7.22,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의 합리적 설정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수정 필요

⑤ 2012년 지적사항

o ('13년 예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고유사업과 중첩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① 2010년 지적사항 답변

o 세부사업 및 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을 제정 및 시행('10.12월)하고,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양자산업협력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o 기존 성과지표가 양자산업협력사업의 독자적인 성과를 나타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는 새로운 성과지표(신흥시장진출법인수)를 도입

② 2011년 지적사항 답변

o 양자산업협력 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시행('10.12월)함에 따라, 세부사업자가 사업비 산정시 '정부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고(운영지침 제15조), 정산시 항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명기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제17조, [별지4]). 그 외에도, 별도계정을 통한 사업비 관리(제16조), 사

업비 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제17조) 등을 규정하여 세부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토록 조치 완료

o '12년 성과지표를 정부간 협력채널 신규확대 및 운영 성과(수행성과)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법인개설 수(기여성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설정

③ 2012년 지적사항 답변

o KOTRA고유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KOTRA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정부간 또는 민관 공동 협력채널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 및 경협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심의 및 선정	□선정위원회
↓	
사업 선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자
↓	
세부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	
사업평가 및 정산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단, 한일 산업협력 사업은 '92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 한일재단, 일한재단을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한일재단이 사업주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048	5,600	6,600	1,000	17.8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1-302

* 담 당 자 : 통상협력국장(도경환), 통상협력총괄과장(윤상흠, 044-203-5680), 사무관(전수하, 044-203-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 ~ 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출연, 민간경상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사업목적

□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①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②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미래먹거리 창출, ③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을 지원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4,750백만원)

-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및 산업별 발전방안 수립지원 : 350백만원

*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파트너로 한국이 참여키로 합의(한-인니 정상회담, ‘10.12월),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지경부-경제조정부, ‘11.5월)

* MF이행 모니터링, 프로젝트 발굴·관리, 정보 수집·분석 등 인니 경협 사무국 운영 지원 350백만원

- 베트남 인큐베이터 파크 조성 지원 : 3,400백만원

* 베트남 원전 수출로 인한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한-베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MOU체결(‘12.3월, 지경부-산업부)

- 필리핀 광역 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 200백만원

* 필리핀 이사벨라주 타당성 조사 100백만원, 바탕가스주 타당성 조사 100백만원

- 베트남 농기계협력사업 : 400백만원

* 세계2위 쌀생산국인 베트남에 농기계 수출을 위한 국산농기계 현지 맞춤형 개량화 지원 : 타당성 조사비 250백만원, 농기계기술자 교육비 150백만원

- 베트남 기후변화 산업개발 프로젝트 : 200백만원

* 베트남 현지 조사 및 컨설팅 50백만원, 현지 세미나 개최 30백만원, 전문가 현지 파견 기술지원 비용 70백만원, 베트남 초청연수 50백만원

- 베트남 표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 200백만원

* 품질관리 체계 구축 F/S및 품질분임조 체계 구축 지원 100백만원, 베트남 초청연수 및 전문가 현지 파견 교육 100백만원,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545백만원)

- 중남미 기술협력센터 설립 지원 : 180백만원

* ’13년도 시험·인증 기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후속 사업

* 센터설립 법률자문비 30백만원, 설립관련인력 브라질 방문 20백만원, 센터 기자재비용 및 운영비 36백만원, 통역지원 24백만원, 회의비 10백만원

- 중남미 광해방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140백만원

* 중장기 광해관리 M/P연구 및 수립 60백만원, 기초자료조사 30백만원, 초청연수 : 50백만원

- 중남미개발은행(CAF)을 활용한 중소기업협력 기반 구축 지원 : 115백만원

  * 현지조사 40백만원, 공동연구 20백만원, 공동세미나 30백만원, 현지 전문가 초청(2인) 20백만원, 책자발간 (연구결과) 및 홍보 5백만원

- 중남미 스마트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지원 : 110백만원

  * 여비 40백만원, 인사초청프로그램 25백만원,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 10백만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35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300백만원)

- 에티오피아 섬유/피혁 기술협력 및 운영지원 사업(300백만원)

  * 에티오피아 산업부가 한국의 섬유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협력 요청(VIP 에티오피아 방문, 11. 07), 양국 정부간 산업협력 MOU 체결('11.11)

  * 현지 섬유기술협력사무소 운영 : 80백만원, 에티오피아 섬유산단공관련 해외투자 활동 : 100백만원 섬유/피혁기술 워크샵 개최(2회) : 80백만원 등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325백만원)

- 몽골 광해관리 기술표준 수립지원 : 225백만원

  * 몽골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 정보화 구축사업 추진('10～'13년), 몽골 전문감독원과 광해평가 및 관리기준 부립 협력 MOU체결('13년 6월)

  * 광해 기술표준 수립 90백만원,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 80백만원, 현지 워크숍 및 전문가 파견 55백만원

- 몽골 가스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100백만원

  * 가스기술기준 등 자료제공사업 비용 30백만원, 가스담당 공무원·업계관계자 교육훈련비용 40백만원, 안전진단사업 비용 20백만원, 평가세미나 비용 10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680백만원)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발전 협력사업 : 280백만원

  *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과 태양에너지 로드맵 이행 방안 컨설팅 : PV테스트베드 구축·교육 200백만원, 태양에너지로드맵 이행방안 컨설팅 40백만원, 현지워크샵 30백만원, 자료조사등 30백만원

- 우즈베키스탄 섬유협력사업 : 400백만원

  *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인 우즈벡 섬유산업 진출을 위한 섬유기술센터 건립 및 기술인력 양성 : 타당성조사비 250백만원, 세부운영계획 수립비 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신흥국가의 고성장에 따라 대형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 등 내수 시장 확대로 신흥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

- 또한 신흥국들은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풍부한 자원부존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잠재적 시장임에 분명함

○ 한편, 신흥국과의 산업자원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사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따라서 원전□플랜트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 지원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	**5,048**	**5,600**	**6,600**	**1,000**	**17.8**
▪ 중남미 개발협력지원	1,032	545	545	-	-
▪ 동북아 개발협력지원	150	325	325	-	-
▪ 중앙아·CIS 개발협력지원	116	180	680	500	277
▪ 동남아 개발협력지원	3,500	4,250	4,750	500	11.7
▪ 아프리카 개발협력지원	250	300	300	-	-
□ **비목**(합계)	**5,048**	**5,600**	**6,600**	**1,000**	**17.8**
○민간경상보조(320-01)	1,848	2,500	2,400	-100	△4
○출연(350-01)	3,200	3,100	4,200	1,100	35.5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정상 외교, 양국간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원하기로 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지원사업의 적시성 있는 추진을 통해 상대국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함으로써 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에 기여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F/S 등), 관련 기술 지원, 인력교육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된 지원 사업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56.00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 : 545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180백만원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 325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4,250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 300백만원
'14	66.00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 : 545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680백만원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 325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4,750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 300백만원
'15	60.62	· 중남미 개발협력 지원 : 545백만원 · 중앙아·CIS 개발협력 지원 : 442백만원 · 동북아 개발협력 지원 : 325백만원 · 동남아 개발협력 지원 : 4,450백만원 · 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 : 300백만원
'16	76.81	·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흥국에 대한 적정기술 보급 지원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 확대로 이에 따른 상대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17	88.00	· 대형 프로젝트 수주 및 신흥국에 대한 적정기술 보급 지원 등 정부간 산업자원협력 확대로 이에 따른 상대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및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한국-베트남간 경제협력 패키지 사업으로 '한-베 인큐베이터파크 조성사업' MOU 체결('12.3월 한 지경부 - 베트남 산업무역부)
- 한-인니 인니 경제개발 및 산업별 발전방안 수립지원 정상합의 ('10.12)
-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지경부-경제조정부) 체결('11.5)
- 몽골 에너지자원협력 지경부(한국)-광업에너지부(몽골) MOU 체결 ('11.8월 정상 몽골 순방시)
- 한-캄보디아 NPCC와 기술협력 MOU 체결('11.5)
- 한-에티오피아 섬유기술협력 MOU 체결('11.11, 한 지경부- 산업부)
- 우즈벡 태양광 에너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체결('13.12, 산업부-재무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산업자원협력 개발지원	-	-	50.48	56.00	66.0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 )	( )	( )	( )	( )	( )	( )
'11년	( )	( )	( )	( )	( )	( )	( )
'12년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3년 지적사항
- ('13년 예산 국회 예정처) 사업 기획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후속조치
- (재정부 KSP 사업과는 차별성) 경제발전 경험 전반에 걸친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KSP와 달리 양국간 정상 합의사항, MOU 체결 등과 관련된 지원사업 이행
- (관련 부처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의 연계·조정 가능성) 기재부 KSP 사업 및 외교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산업부가 참여, 위원회의 시행계획 검토 과정에서 연계·조정
- 향후 ODA 효과성 제고 위해 관련 부처와 보다 긴밀한 협의 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KIAT, NIPA)
↓	
사업 심의 및 선정	□선정위원회(KIAT, NIPA)
↓	
사업 선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KIAT, NIPA)→ 사업수행자
↓	
세부사업 수행	□사업수행자
↓	
사업평가 및 정산	□평가위원회(KIAT, NIPA)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47	47	46	△1	△2

* 사업코드 : 21-11-0-113-11-1900-1932-303

* 담 당 자 : 통상협력국장(도경환), 통상협력총괄과장(윤상흠, 044-203-5680), 사무관(전수하, 044-203-568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54~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분담금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국의 위상제고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에 의한 분담금 46백만원

▪ 46백만원= $41,200{=$16,200(전체 예산의 40% 회원국 균등 분담액) + $25,000(교역비중에 따른 배분액, 한국 '09.8～'12.10간 평균 교역량 약 200,000 ton/전세계 교역량 약 9500,000ton)} x 기준환율 1,100원/달러

□ 지원 필요성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회원국 활동을 통해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47**	**47**	**46**	**△1**	**△2.1**
□ 비목(합계)	**47**	**47**	**46**	**△1**	**△2.1**
○국제분담금(340-02)	47	47	46	△1	△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면화자문위원회에서 한국의 위상 유지 및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2	0.5	공동배분금액(일정액) + 국별 4년간 원면교역량(TON)평균에 따른 요율에 따라 산정
'13	0.5	상동
'14	0.5	상동
'15	0.52	상동
'16	0.65	상동
'17	0.75	상동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

○ 추진경위

- '53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 '54년 3월 1일 조약 발효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2년부터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이 ODA예산 분리 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0.51	0.51	0.47	0.47	0.4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이월·불용없이 전액집행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0년	0.51 ( )	- ( )	- ( )	0.51 ( )	0.51 (100%)	- ( )	- ( )
'11년	0.51 ( )	- ( )	- ( )	0.51 ( )	0.51 (100%)	- ( )	- ( )
'12년	0.51 ( )	- ( )	- ( )	0.51 ( )	0.51 (100%)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기구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공문 접수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 감 (B-A)	%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122	100	△22	△18

* 사업코드 : 21-11-0-110-113-1900-1932-402
* 담 당 자 : 통상협력국장(도경환), 동북아통상과장(이은호, 044-203-5690), 사무관(박철오)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2. 사업목적

□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를 내실화하여 3국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3. '14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지원 : 75백만원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참석 및 고위실무자급 협의체 운영·지원 : 40백만원

- 공식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및 한중일 협력 합의사항 이행 평가 보고서 작성·발간 : 20백만원

- 업무추진비 : 15백만원

○ 한중일 산업·기술 분야 협력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지원 : 25백만원

구 분	'13예산	'14예산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지원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 = 100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참석=35 (업무추진비 15 포함)
	-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20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서 및 이행평가 보고서=20
▪ 3국간 협력분야 공동연구	-	한중일 산업·기술분야 협력사업 및 정책개발 공동연구=25
▪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책자발간	주요국의 통상환경 분석 보고서 발간=22	-

□ 지원 필요성

○ 한중일 통상장관회의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로서, 3국의 산업분야 정책 공조 및 통상 현안 논의

○ 특히 한중일 FTA 시대에 대비, 장관급 회의 뿐만 아니라 고위 실무자급 회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통상현안 해결 및 협력사업 진행 필요

- 우리기업들의 中·日 시장진출 애로를 해소하고, 3국간 경제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동북아 시장 확대진출 지원

⇒ 국정과제 132번 "FTA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경량강화"와 관련

< 세부 내역>

(백만원)

구 분	'12결산	'13예산 (A)	'14예산 (B)	증 감 (B-A)	%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122	100	△22	△18
▪ 한중일 통상협의체 운영☒원	-	100	75	△25	△25
▪ 한중일 협력분야 공동연구	-	-	25	25	순증
▪ 외국의 통상환경 관련 책자발간	-	22	-	△22	순감
□ 비목(합계)	-	122	100	△22	△18
○ 일반수용비(210-01)	-	50	67	17	34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	-	△1	순감
○ 임차료(210-07)	-	46	-	△46	순감
○ 국내여비(220-01)	-	10	-	△10	순감
○ 국외업무여비(220-02)	-	1	20	19	1,900
○ 업무추진비(240-01)	-	14	13	△1	△7.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3~'17)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고화

○ '한중일 통상분야 고위실무자 회의' 개최를 통해 통상협력 강화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역내 경제협력 확대 추진

○ 우리기업의 동북아 시장 개척활동 지원 및 기 진출 기업들에 대한 경제·통상 관련 정보 제공

<한중일 통상협력 5개년 계획>

○ 1단계('13) : 한중일 3국간 협력채널 구축, 협력사업 타당성 공동조사
  * 협력채널 : 장관급, 고위 실무자급, 연구기관 간
○ 2단계('14~'16) : 협력채널 공고화, 한중일이 공동참여하는 협력사업 시행
○ 3단계('17) : 협력사업을 토대로 한 우리기업의 中日 시장 진출 지원
  (틈새시장 진출, 中日 내수시장 진출)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3	1.22	한일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1), 통상환경관련 책자발간 (0.22)
'14	1.00	한일중 통상협의체 운영 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
'15	0.97	한일중 통상협의체 운영 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09)
'16	0.89	한일중 통상협의체 운영 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09)
'17	0.74	한일중 통상협의체 운영 지원 및 후속사업 추진 등 (1.09)

* 중기재정소요는 기재부에서 확정한 13-17중기재정계획 기준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6조 통상협력국
  * 10조 각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영업활동 및 기술협력지원
  * 11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관련 협의체 운영
  * 12조 각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 조정 등

○ 추진경위

- 본 사업은 98년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통상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
- 2013년 신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어, 외교부 통상투자진흥강화 및 현안분쟁관리(1,604백만원) 중 일부 예산 이체
- '02년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체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 한중일 통상협력 기반구축	-	-	-	1.22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 '13년 조직개편에 따라 외교부 세부사업 중 일부예산이 이관되어 확인 불가 ('통상투자진흥강화 및 현안분쟁관리' 예산에서 약 7%(122백만원/1,604백만원) 이체)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사항 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